

Issue Paper

2007. 5. 15.

韓-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목차

요약

I. 한-EU FTA의 추진

II. 분야별 주요 쟁점

III. 향후 전망과 경제적 기대효과

IV. 협상전략

부록1. EUCCK의 『2006년 무역장벽백서』 요약

부록2. 주요 EU FTAs의 관세양허표

작성 : 김득갑 수석연구원(3780-8034)
deukab@seri.org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im@samsung.com

《 Executive Summary 》

2007년 5월 7일부터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EU는 우리에게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이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다. 양측 모두 FTA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현재 EU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대에서 답보 상태에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U도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아시아 국가들, 특히 미국과 FTA를 성사시킨 한국과의 FTA 체결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EU는 2006년 11월에 新통상정책을 통해 한국, 인도, ASEAN과의 FTA 협상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에 이어서 아시아국가 중 맨 처음으로 EU와 협상을 갖게 되었다.

EU는 상품과 서비스무역은 물론 지적재산권, 투자 및 경쟁정책, 정부조달시장, 환경, 사회 및 노동 등을 망라한 포괄적인 협정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협상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늦어도 2008년 상반기에는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이 2~3%, 수출물량은 2.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될 경우 더 많은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관세 철폐 시 자동차, 家電, 섬유, 운송기계 등이 최대 수혜품목이 되겠으나, 휴대폰과 반도체 등 IT제품과 선박, 철강 등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화장품, 기계류, 가공농산물(치즈 등 낙농제품, 와인, 위스키 등) 등은 EU로부터의 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한-미 FTA를 협상의 가이드라인과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장벽의 조기 철폐를 요구하는 대신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거나 개방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는 분야는 과감한 시장개방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U가 단일국가가 아닌 27개국으로 구성된 국가 연합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채널의 협상전략을 전개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 전략으로는, 관세인하의 경우 EU-멕시코 FTA 수준에서 비대칭적 관세 양허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통관 절차, 무역구제조치, 원산지 규정의 분야에서는 EU의 비관세장벽이 높으므로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환경규제 분야에서는 이들이 더 이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협의체 운영 등이 요구된다. 서비스시장과 투자분야는 한-미 FTA를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협상에 임해야만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를 방지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향후 한-중 FTA협상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약속해야 한다. 가공농산물의 관세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개방 폭을 결정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요약 》

1. 한-EU FTA의 추진

- 한국경제가 성장하면서 EU와의 경제관계도 갈수록 중요해짐
 - EU는 2006년 기준으로 GDP 14.5조 달러, 인구 4.9억 명의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을 형성
 - 2005년부터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으로 부상
 - 2006년 對EU 수출비중 15.1% (중국 21.3%, 미국 13.3%)
 - EU가입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로 對EU 수출이 증가
 - EU는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한국내 전체 FDI의 1/3 차지
 - 對韓 투자는 영국, 네덜란드 등 서유럽의 6개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서비스분야에 60%가 투자
- 한국이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한 축인 EU와의 FTA 체결이 필수적
 - 현재 한국제품의 EU시장 점유율은 2%대에서 답보 상태
 -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 개도국들이 선진국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
 - 시장점유율 「魔의 3% 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
 -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가 필요
 - EU의 선진화된 서비스를 국내 제조업과 접목할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
 - EU는 한국경제의 對美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균형추 역할도 가능

□ EU로서도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시급한 과제

- 정치적 동기에 의해 체결한 기존의 특혜무역협정¹⁾이 EU경제 성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
- 2006년 11월 新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 WTO 다자체제와 더불어 양자협정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강조
 -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던 도하개발라운드(DDA)의 타결이 무산된 것이 정책전환의 결정적 계기
 - 경제적 기준을 토대로 한국, 인도, ASEAN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선정
-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국 중 한국과의 FTA 협상을 가장 먼저 착수
 - 한-미 FTA협정 발효시 세계 11위 경제규모에 연평균 4~5% 성장하는 매력적인 한국시장을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

□ 2007년 5월 7~11일에 공식 협상을 개시

- 2006년 7, 9월에 1, 2차 예비회담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
- 2007년 4월 23일 EU 각료이사회는 집행위에 협상권한(Mandates)을 위임하고, 한국도 5월 1일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최종 승인
- 연내 5~6회의 공식 협상을 가질 예정
 -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이후 2차 협상부터 세부 논의 본격화 전망

2. 분야별 주요 쟁점

□ 한국과 EU는 새로운 차원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

1) 지중해 국가, ACP(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연안 78개국), 메르코수르(Mercosur) 등과의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특혜무역을 제공

- WTO의 다자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광범위한 분야까지도 포괄하는 FTA를 구상
 - 상품 및 서비스무역(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직접투자, 정부조달시장,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지속가능한 개발(환경, 사회 및 노동) 등을 망라
- EU는 EU-칠레 FTA협정을 기본모델로 삼되, 미국과는 달리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
- 한국은 관세인하에, EU는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더 큰 관심

□ 관세장벽 분야는 양측 모두 고세율 관심품목에 초점

- 한국과 EU 모두 수입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음
 - 평균 관세율 : 한국 11.2% ↔ EU 4.2% (미국 3.7%, 일본 3.1%)
-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류, 의류, 농산물 등 주요 관심품목의 관세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것이냐가 쟁점
 - 한국은 자동차(EU관세 10%), 일부 가전제품(14%), 섬유·의류(12%), 타이어(4.5%) 등의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원하고 있음
 - EU는 자동차(한국 관세 8%), 기계류(8%), 의약품(8%), 위스키(20%)와 와인(15%) 등 가공농산물, 의류(13%) 등의 관세인하를 희망

□ 통관 절차와 관련해서는 EU의 복잡한 세관행정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관건

- EU 회원국들의 상이한 세관행정이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원산지 판정, 품목 분류, 통관 소요시간 등 세관업무가 회원국마다 상이하여 수출기업들에게 혼선을 야기
 - 2007년 새로운 제품분류체계의 도입으로 무관세였던 일부 IT제품의 관세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

- EU 회원국들의 세관행정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가 논의의 핵심

□ 기술장벽은 중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

- 불필요한 제품 검사, 인증 및 적합성 평가 등이 외국기업에게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양측 모두 주요 쟁점 분야 중 하나로 인식

- EU는 한국의 자동차, 건설기계, 화장품, 식음료,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불필요한 시험 및 인증절차를 폐지하거나 처리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 한국은 EU의 CE마크 부착 의무화와 회원국 차원에서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를 이슈로 부각시킬 필요

· 인증 소요시간과 비용은 수출업체에 큰 부담

□ 위생 및 검역조치(SPS)는 EU가 중시하는 새로운 쟁점 분야

- EU는 한국의 엄격한 SPS²⁾ 관련 법규의 개선을 요구

· 돼지고기 가공공정에 대한 엄격한 검역기준 등

- EU-칠레 FTA가 협상모델이 될 경우 동등성(Equivalence)³⁾ 원칙과 지역화(Regionalisation)⁴⁾ 개념의 수용을 요구할 전망

- EU는 SPS 이슈를 다루기 위한 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와 2000년 이후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⁵⁾의 비준도 요구할 가능성

2)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Restrictions; SPS)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되, 이를 악용하여 식품 및 농축산물 무역의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3) 수출국이 자신들의 SPS조치로 인한 보호수준과 수입국의 SPS조치에 의한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해당 위생 및 검역조치를 수입국의 규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원칙

4) 질병 발생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원칙

5) 정확한 명칭은 'The Cartagena Protocol of Biosafety'

-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협약으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을 명시

□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EU로부터의 제도개선 압력이 예상

- 한국은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로 인식
 - 미국은 한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EU는 '요주의국가(Priority Countries list)'로 분류
- EU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
 - 명품 모조품의 불법 수입 및 시중 유통의 근절을 요구
 - 농산물, 와인, 증류주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의 보호 강화를 요구

□ 서비스시장과 관련해서는 EU는 상업적 주재(Mode 3)에, 한국은 전문직 분야의 시장개방(Mode 4)에 관심

- EU의 서비스시장은 거의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한국시장 개방에 주요 초점이 모아질 전망
 - 반면 한국은 기 개방된 EU의 서비스시장 중 최혜국대우(MFN)의 예외로 인해 접근이 제한된 전문직 분야(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한방의료, 간호사, 관광 등)의 개방을 요구할 필요
- EU는 상업적 주재 등의 서비스무역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에 주력한다는 방침
 - 외국인 지분 제한, 차별적인 등록요건과 승인 절차 등
- 협상 과정에서 EU는 한국의 법률, 금융, 통신, 운송 등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에 대해 3단계에 걸쳐 개방하기로 한 일정보다 더 일찍 개방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

- 통신서비스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의 철폐가 핵심사항
-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의 퇴직연금시장에 큰 관심을 표명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는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

□ 투자 및 경쟁정책에서는 서비스분야의 내국민 대우가 쟁점

- 투자분야 협상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체결한 기존의 투자협정을 보완하는 선에서 논의될 전망
- 한-미 FTA협상에서 막판 진통을 겪었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는 논의에서 제외
- EU는 상호주의를 앞세워 은행, 보험, 투자서비스 분야의 내국민 대우를 요구
- 국내 부동산시장의 규제와 관행도 문제 삼을 가능성

□ 정부조달시장 분야에서는 입찰 하한선(Threshold)의 인하와 기술장벽 철폐가 쟁점

- EU는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의 개방폭 확대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
- 한-미 FTA에서는 양허 하한선을 13만 SDR(특별인출권)에서 6.5만 SDR로 인하⁶⁾하는데 합의
- 한국은 EU의 정부조달시장 입찰과 관련한 진입장벽 철폐를 요구
- 고용 및 환경 영향 평가, CE마크 이외의 자국표준 요구 등의 진입장벽

□ 원산지 규정은 한국측 요구를 EU가 수용하느냐가 관건

- EU는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⁷⁾을 가급적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

6) 외국 기업이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조달사업의 하한선(최소 금액)이 13만 SDR에서 6.5만 SDR로 낮아짐으로써 정부조달시장이 외국기업에게 대폭 개방됨을 의미

-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외가공을 인정받아야 하고, 인정품목도 최대한 확보할 필요
 - EU는 관세 환급(Drawback)⁸⁾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허용하더라도 단기간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EU-멕시코 FTA(2년간 허용), EU-칠레 FTA(4년간 허용), EU-남아공(언급 없음)
 - 한국은 EU에게 역외가공과 관세 환급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
- 무역구제조치는 한국이 가장 중시하는 비관세장벽 분야
- EU는 무역구제조치(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국가
 - 현재 EU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5건, 상계관세 1건 등 총 6건의 수입규제를 부과 중
 - 전기전자제품이 주요 수입규제 대상
 -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구제조치 개정작업과 연계하여 한국은 EU에게 무역구제조치의 개선을 요구할 필요
 - 반덤핑 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반덤핑조사의 개시나 제소 이전에 서면 통보 및 사전협의를 가능한 공식 채널을 제도화
- 노동기준에 대해서는 큰 쟁점이 없을 전망
- EU는 EU-칠레 FTA에서 ILO 협정 수준의 노동기준을 명시하는데 그침
 - 남아공 및 멕시코와의 FTA에서는 노동기준을 포함시키지 않음
 - 다만,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미국 의회의 노동기준 강화요구가 있을 경우 향후 한-EU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7) 한 국가에서 반제품을 생산(1단계)하여 이를 역외에 수출하여 조립(2단계)하고, 이들 다시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3단계)했을 때, 1단계의 부가가치와 3단계의 부가가치를 합하여 역내 부가가치로 인정해주는 규정

8)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시 환급해주는 제도

- 농업은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EU산 가공농산물의 관세인하 여부가 쟁점
 - EU는 기본농산물(Basic Products)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량안보를 중시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쟁점이 없을 전망
 - 반면, EU가 경쟁력을 지닌 가공농산물(Processed Products)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
 - 돼지고기, 낙농품, 주류(와인, 위스키, 맥주), 올리브유 등
 - 농업분야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비관세장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큼
 - 검역절차 완화, 지리적 표시제(GIs)의 보호 강화⁹⁾ 등
 - 한국은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EU의 수입수량 제한 철폐나 완화를 요구할 필요

3. 향후 전망 및 경제적 효과

- 완전 타결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
 - 현재 분위기로는 연내 타결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 한-미 FTA의 일부 쟁점 분야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미 FTA의 비준작업에 따라 EU가 협상의 조기 타결을 원할 것이라는 관측
 - 하지만 EU가 포괄적인 FTA협정을 원하고 있어 금년을 넘겨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 EU 회원국 간 내부의견 조율도 타결시간의 결정 변수

9)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부유럽의 농업 국가들이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

- 결론적으로 한-미 FTA의 비준 및 발효 시점에 따라 한-EU 협상 속도가 영향을 받아 늦어도 2008년 상반기에는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 한-EU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

- 한-EU FTA 체결 시 한국경제는 2~3%의 GDP 증가와 2.5~5%의 수출 물량 증가가 예상¹⁰⁾
 - 공산품과 농산물의 관세 철폐와 서비스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달리 나옴
 - 비관세장벽의 철폐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무역효과는 더욱 증가
- 한국의 최대 수혜품목은 자동차(수출 40% 증가), 전기전자(13.5% 증가), 섬유(9% 증가), 운송기계(6% 증가) 등
 - 반면 휴대폰, 반도체, PC 등의 IT제품과 선박, 철강 등의 제품은 무관세 품목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미미
- EU는 자동차, 낙농제품, 주류(와인, 위스키), 기계류 등에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4. 협상전략

□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FTA를 추진

- 포괄적인 한-EU FTA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한-EU 경제관계를 심화·확대시켜 아시아 국가 중 EU와 ‘최고의 파트너십(Best Partnership)’을 구축
- 한국은 EU를 한-미 경제관계의 균형자 또는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고, EU는 한국을 동북아의 관문(Gateway)으로 활용

10) 박순찬(2004), 김홍중(2005), 고종환(2006)의 연구 결과를 종합

□ 수출시장 확대와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협상자세가 필요

- EU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EU시장에서의 점유율 한계를 돌파

- 국제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고 개방 시 피해가 크지 않는 분야의 경우 과감한 시장개방과 관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모색

한-EU FTA와 한-미 FTA 비교

		한-EU FTA	한-미 FTA
협상 일정	협상 선언	2007.04.23 (EU 일반이사회 승인)	2006.02.03 (美 상원의원 발표)
	개시	2007.05.07 (1차 협상)	2006.06.05 (1차 협상)
	협상 경과	연내 네 차례 회의 예정	8차 협상 진행
	타결	늦어도 2008년 상반기 예상	2007.04.02
양측 협상대표		김한수(통상교섭본부 FTA추진단장)/ Garcia Bercero(통상총국 동아시아 국장)	김종훈(APEC 대사)/ Wendy Cutler(USTR 대표보)
주요 쟁점	관세양허	향후 10년 내 95% 철폐	상품 100% 관세철폐 (94% 품목 3년 내 철폐)
	투자	투자자-국가 소송제 제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포함
	농업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등 비교역적 기능 인정 (가공농산물 개방 확대)	예외 없는 개방(쌀 제외)
	서비스시장	포지티브 방식 주장(EU)	네거티브 방식 주장(미국)
	지적재산권	모조품, 지리적 표시제 보호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노동기준	큰 쟁점은 없을 전망 (미국과의 재협상이 변수)	ILO 수준에서 재협상 요구
경제적 예상효과 (KIEP)	국내총생산 (GDP)	2~3%(자본축적) 1.2~2%(정태적)	1.28%(자본축적) 0.32%(정태적)
	수출	단기 64.7億달러 증가 장기 110.4億달러 증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23.4億달러 증가
	고용	장기적으로 30~59萬名 증가	장기 8.3萬名,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시 33.5萬名 증가
한국과의 FTA 의의		아시아 국가와 최초의 FTA	멕시코 이후 최대 규모의 FTA

□ 한-미 FTA를 협상의 가이드라인과 지렛대로 활용

- 한-미 FTA를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EU와의 협상은 한-미 FTA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제시한 양허안의 $\pm 5\%$ 에서 타결되도록 노력
- 한-미 FTA의 비준을 EU와의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
 - 한-미 FTA가 예정대로 비준·발효될 경우 EU는 협상을 가급적 조기에 타결하고자 노력할 것임
 - 따라서 EU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

□ EU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채널의 협상전략을 전개

-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가 연합체이므로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
 - 산업구조와 소득수준이 다르므로 국가마다 한-EU FTA에 거는 기대와 관심 분야가 차이
-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도 전개할 필요

분야별 협상전략

분야	협상전략(또는 對EU 요구사항)
관세인하	◇EU-멕시코 FTA(비대칭적 관세양허)를 협상모델로 활용 - EU : 일반 공산품 3년내 관세 철폐 - 한국 : 일반 공산품 5~7년내 관세 철폐
통관 절차	◇회원국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 ◇稅番 변경으로 인한 관세인상 방지(IT제품 등)
서비스시장	◇한-미 FTA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미국에 최혜국대우(MFN)를 이미 약속 ◇EU서비스시장에서의 내국민대우 보장(전문직 시장 개방 등)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조치의 개정작업에 반덤핑규정 및 운영상 문제점 반영 ◇공동위원회 및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 집행 강화(한-중 FTA 협상을 고려) ◇지리적 표시제(GIs) 보호 강화를 약속하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 ◇일부 회원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
기술장벽(TBT)	◇주요 관심 분야의 상호 불필요한 시험 및 인증절차의 폐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위생 및 검역조치 (SPS)	◇주요 쟁점사항인 돼지고기(EU)와 인삼(한국)의 검역 및 위생절차 문제를 연계 처리 ◇EU-칠레 FTA 수준에서 EU요구 수용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 문제를 신속 처리 - 한-미 FTA와의 양립성 문제 고려
투자 및 경쟁정책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내국민 대우 ◇자본이동을 일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Safeguard) 조항 삽입
노동기준	◇개성공단의 저임금 노동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응
원산지 규정	◇역외가공 및 관세 환급 인정 - 역외가공 인정 품목과 관세 환급 허용기간을 최대한 확보
환경 규제	◇EU 환경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사전 협의채널 제도화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시행시기 유예 및 비용절감 방안 강구
농업	◇가공농산물의 관세인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 - 국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수용 폭 결정

I. 한-EU FTA의 추진

1. 한-EU 경제관계

1996년의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경제교류가 점차 확대

- EU(유럽연합)¹¹⁾는 8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
 - EU는 단일시장 완성과 EU확대에 주력한 결과 지리적·경제적으로 유대관계가 적은 아시아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
 - 8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경제가 세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부상하면서 EU도 아시아에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
 - 1994년과 2001년에 채택된 EU의 아시아전략(Asia Strategy) 보고서에서 아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 1996년부터 격년제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개최
 - ASEM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간 최초의 정상회담으로 2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단순한 국제포럼
 - 역사가 짧고 합의 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場 역할
- 한국과 EU는 1996년 10월에 ‘무역 및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에 서명
 - 1963년 7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양자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
 - 70~80년대에 한국내 정치·사회적 여건으로 정치외교 관계는 제한

11)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1957년에 6개국으로 출범한 이후 그동안 6차 확대작업을 거쳐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증가했으며, 경제통합 수준도 관세동맹(1968년) → 공동시장(1993년) → 경제통화동맹(1999년) 등으로 심화되었음.

- 경제관계도 양자체제보다는 GATT 다자체제를 통해 발전
- 양측은 1996년에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무역증대와 경제협력 확대에 노력할 것을 약속
 - 농업, 조선, 과학·기술, 지적재산권, 경제정책 및 산업, 환경, 에너지 등 11개 분야가 대상
- 두 지역 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례회의가 제도화
 - 한-EU 정상회담, 한-EU-회원국의 3자 외무장관 회담, 정무총국장 3자 회의¹²⁾,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등
 - 연간 2회에 걸쳐 회의를 갖는 공동위원회는 경제관계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
- 1996년의 기본협정 이후 한-EU 간에 주요 협력협정이 체결
 - 세관 분야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1997년) : 관세 법규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 통신 분야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1997년) : 두 지역 간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호적이며 투명하고도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
 - 한-EU 과학기술 협력협정(2006.11) : EU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각종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허용
- 1994년부터 한국과 EU는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¹³⁾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EU는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으로 부상

□ EU는 2005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으로 부상

- 2005년에 한국의 對EU 수출(437억 달러)은 對美 수출(413억 달러)을 추월하여 對中 수출(619억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

12) 차관보급 정책협의체

13)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협정체결국 간에 상호 인정하기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체결하는 협정

- 2006년에는 미국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
- 동유럽 국가들의 EU가입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로 對EU 수출이 200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
 - 2003~2006년에 對EU 수출은 약 2배 증가(249억 달러 → 492억 달러)

한국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 추이

(십억 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세계	125.1	129.7	136.2	132.3	143.7	172.3	150.4	162.5	193.8	253.8	284.4	325.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U	16.3	15.3	16.9	18.2	20.2	23.4	19.6	21.7	24.9	37.8	43.7	49.2
	13.0%	11.8%	12.4%	13.7%	14.1%	13.6%	13.0%	13.4%	12.8%	14.9%	15.4%	15.1%
중국	9.1	11.4	13.6	11.9	13.7	18.5	18.2	23.8	35.1	49.8	61.9	69.5
	7.3%	8.8%	10.0%	9.0%	9.5%	10.7%	12.1%	14.6%	18.1%	19.6%	21.8%	21.3%
미국	24.1	21.7	21.6	22.8	29.5	37.6	31.2	32.8	34.2	42.8	41.3	43.2
	19.3%	16.7%	15.9%	17.2%	20.5%	21.8%	20.7%	20.2%	17.7%	16.9%	14.5%	13.3%
일본	17.0	15.8	14.8	12.2	15.9	20.5	16.5	15.1	17.3	21.7	24.0	26.5
	13.6%	12.2%	10.8%	9.2%	11.0%	11.9%	11.0%	9.3%	8.9%	8.5%	8.4%	8.2%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 수입 측면에서는 對日 수입(16.8%)이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對EU 수입은 對美 수입(10.9%)보다 적은 9.8%에 불과
 - 對日, 對美, 對EU 수입은 감소 추세인 반면 對中 수입은 증가 추세
- 그 결과 3대 선진국과의 무역 중 對EU 흑자 규모(2006년 190억 달러)가 가장 큼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 추이

(십억 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세계	135.1	150.3	144.6	93.3	119.8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9.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U	18.2	21.2	19.0	10.9	12.6	15.8	14.9	17.1	19.4	24.2	27.3	30.2
	13.5%	14.1%	13.1%	11.7%	10.5%	9.8%	10.6%	11.2%	10.8%	10.8%	10.4%	9.8%
중국	7.4	8.5	10.1	6.5	8.9	12.8	13.3	17.4	21.9	29.6	38.6	48.6
	5.5%	5.7%	7.0%	7.0%	7.4%	8.0%	9.4%	11.4%	12.3%	13.2%	14.8%	15.7%
미국	30.4	33.3	30.1	20.4	24.9	29.2	22.4	23.0	24.8	28.8	30.6	33.7
	22.5%	22.2%	20.8%	21.9%	20.8%	18.2%	15.9%	15.1%	13.9%	12.8%	11.7%	10.9%
일본	32.6	31.4	27.9	16.8	24.1	31.8	26.6	29.9	36.3	46.1	48.4	51.9
	24.1%	20.9%	19.3%	18.1%	20.2%	19.8%	18.9%	19.6%	20.3%	20.6%	18.5%	16.8%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 한국은 對EU 수출국 중 8위를 기록

- 2005년 수출액 기준으로 한국은 EU에 대한 8번째 수출국
 - 非유럽권 국가 중에서는 4번째 수출국
- 2000~2005년 동안 한국의 對EU 수출은 24.5% 증가
 - 중국(112.5%), 터키(83.7%), 러시아(75.2%), 인도(47.7%), 노르웨이(42.4%)보다는 낮으나, 미국(-20.8%), 일본(-20.5%), 대만(-15.8%), 캐나다(-9.2%)보다는 높음
- 한국은 EU시장에서 EU와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노르웨이, 스위스, 터키)와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경쟁
- 그러나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6년간 2.8%로 답보 상태

주요 교역 상대국의 對EU 수출 추이

(십억 유로)

순위	국가	2000		2005		2000~200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1	미국	205.64	20.6	162.94	13.9	-20.8%
2	중국	74.37	7.5	158.04	13.4	112.5%
3	러시아	60.92	6.1	106.74	9.1	75.2%
4	일본	91.84	9.2	73.04	6.2	-20.5%
5	노르웨이	47.15	4.7	67.14	5.7	42.4%
6	스위스	62.32	6.3	66.08	5.6	6.0%
7	터키	18.21	1.8	33.45	2.8	83.7%
8	한국	26.7	2.7	33.23	2.8	24.5%
9	대만	28.28	2.8	23.82	2	-15.8%
10	브라질	18.39	1.8	23.22	2	26.3%
11	인도	12.8	1.3	18.9	1.6	47.7%
12	캐나다	18.9	1.9	17.16	1.5	-9.2%

자료: EUROSTAT

□ EU의 입장에서 한국은 제 10위의 시장

- EU의 對韓 수출은 2000~2005년에 20.5% 증가하였으나, EU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
- 對韓 수출의 비중도 2000년 이래 1.9%에서 정체

EU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수출 추이

(십억 유로)

순위	국가	2000		2005		2000~200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1	미국	237.59	27.7	251.29	23.5	5.8%
2	스위스	72.41	8.4	81.91	7.7	13.1%
3	러시아	22.51	2.6	56.4	5.3	150.6%
4	중국	25.76	3	51.75	4.8	100.9%
5	일본	45.46	5.3	43.65	4.1	-4.0%
6	터키	30.69	3.6	41.83	3.9	36.3%
7	노르웨이	26.35	3.1	33.78	3.2	28.2%
8	캐나다	21.04	2.5	23.67	2.2	12.5%
9	인도	13.63	1.6	21.1	2	54.8%
10	한국	16.7	1.9	20.13	1.9	20.5%
11	브라질	16.84	2	15.97	1.5	-5.2%
12	대만	15.11	1.8	12.82	1.2	-15.2%

자료: EUROSTAT

양측은 대체로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형성

- 한국은 전자제품과 수송기계에서, EU는 기계류와 화학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면서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형성
 - 1990~2006년의 한-EU 수출입 통계를 바탕으로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무역특화지수가 일관되게 (+)와 (-)를 보이는 업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
 - 다만 자동차, 기계류, 철강·금속, 섬유·의류 등의 경우 세부 품목에서는 상호 경쟁관계가 형성
 - EU는 상위기술~하위기술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업종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비교우위 업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 이는 한국의 對EU 수출이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과 EU의 무역구조

	EU 비교우위	한국 비교우위
상위 기술	정밀화학제품, 정밀기계, 산업기계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중상위 기술	기계 기계류, 중전기기, 기타 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송기계, 가정용 전자제품
중하위 기술	기초산업기계, 기타 요소공구 및 금형, 비철금속제품, 요업제품	고무제품
하위 기술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농산물	직물, 섬유원료, 섬유사

주 : EU의 비교우위 품목은 무역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무역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를 보인 업종을 의미

□ 1990~2006년에 한국과 EU의 무역구조가 고도화

- 섬유제품, 신변잡화 등의 하위기술제품의 무역특화지수는 하락
- 자동차,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등의 상위기술제품의 무역특화지수는 상승

한국의 對EU 무역특화지수 변화

MTI 코드	제품구분	품목명	무역특화지수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81	상위기술	산업용 전자제품	0.28	0.57	0.54	0.64	0.57
83	상위기술	전자부품	0.23	0.46	0.44	0.40	0.57
72	상위기술	산업기계	-0.89	-0.75	-0.27	-0.15	-0.06
22	상위기술	정밀화학제품	-0.74	-0.71	-0.66	-0.70	-0.73
73	상위기술	정밀기계	-0.13	-0.51	-0.85	-0.90	-0.91
74	중상위기술	수송기계	0.24	0.34	0.63	0.69	0.68
82	중상위기술	가정용 전자제품	0.90	0.67	0.78	0.78	0.75
21	중상위기술	석유화학제품	-0.60	-0.28	-0.06	-0.20	-0.09
79	중상위기술	기타기계류	-0.95	-0.87	-0.72	-0.61	-0.50
84	중상위기술	중전기기	-0.77	-0.72	-0.57	-0.75	-0.66
29	중상위기술	기타 화학공업제품	-0.85	-0.77	-0.82	-0.78	-0.75
61	중하위기술	철강제품	-0.36	-0.30	-0.02	-0.45	-0.01
32	중하위기술	고무제품	0.63	0.59	0.70	0.65	0.66
71	중하위기술	기초산업기계	-0.59	-0.69	-0.40	-0.40	-0.41
75	중하위기술	공구 및 금형	-0.60	-0.56	-0.36	-0.44	-0.35
13	중하위기술	광물성연료	N/A	N/A	-0.77	0.39	0.65

31	중하위기술	플라스틱제품	0.02	-0.08	0.09	0.18	0.20
62	중하위기술	비철금속제품	-0.81	-0.90	-0.62	-0.72	-0.64
85	중하위기술	전선	-0.14	-0.25	0.19	-0.23	0.09
24	중하위기술	요업제품	-0.61	-0.71	-0.35	-0.55	-0.58
94	중하위기술	안경 및 콘택트렌즈	0.44	0.33	0.30	-0.03	-0.07
54	중하위기술	운동 취미오락 기구	0.66	0.23	0.38	-0.06	0.11
43	하위기술	직물	0.32	0.19	0.56	0.44	0.36
44	하위기술	섬유제품	0.85	0.16	0.46	-0.22	-0.31
42	하위기술	섬유사	0.40	0.25	0.47	0.43	0.28
41	하위기술	섬유원료	N/A	-0.12	0.61	0.37	0.37
51	하위기술	신변잡화	0.93	0.47	0.30	-0.30	-0.48
25	하위기술	제지 및 종이제품	N/A	N/A	-0.83	-0.64	-0.66
04	하위기술	수산물	0.78	0.57	0.15	-0.18	-0.18
01	하위기술	농산물	-0.51	-0.87	-0.89	-0.89	-0.91

주 :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수입)/(수출+수입)으로 계산하며, (+)는 수출>수입으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는 수출<수입으로 수출경쟁력이 없는 것을 의미

□ EU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주로 상품을 수입하고 서비스를 수출

- EU는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는 적자(93억 유로 적자), 서비스 교역에서는 흑자(16억 유로 흑자) 기조를 유지

한-EU 직접투자

한국의 對EU 투자

□ 한국의 對EU 투자 누계액(신고기준)은 2006년 현재 138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1,059억 달러)의 13%를 차지

- 한국의 對EU 투자는 對中, 對美 투자의 50~70% 수준
 - 한국의 對中 투자 누계액은 254억 5,400만 달러로 전체의 24.0%, 對美 투자는 206억 6,700만 달러로 전체의 19.5%를 차지
- 하지만 한국의 對EU 투자는 2001년 이후 빠르게 증가
 - 지난 6년간의 투자건수는 1991~2000년 수준을 이미 상회했으며, 투자금액도 이 기간의 2배

한국의 對EU 투자 추이(신고기준)

(건수, 백만 달러)

	1968-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6	누계
투자건수	56	96	417	510	1,079
투자액	58	200	3,940	7,920	13,80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對EU 투자는 2003년 이후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이동

- 전통적으로 네덜란드와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가 한국기업의 주요 투자국
- 2004년 5월 동유럽 8개국의 EU가입 이후 한국 기업들의 對EU 투자의 중심이 동유럽으로 이동
 - 2001~03년에는 對EU 투자의 95%가 서유럽에 집중되었으나, 2004~06년에는 對EU 투자의 67%가 동유럽에서 이루어짐
- 서유럽에 비해 저렴한 동유럽의 인건비가 투자촉진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분야의 대기업이 동유럽 투자를 주도
 - 삼성전자(헝가리와 슬로바키아), LG전자(폴란드), 현대기아자동차(체코, 슬로바키아), 한국타이어(헝가리) 등이 대규모로 투자
 - 2006년에 현대자동차가 10억 달러 이상을 체코에 투자하기로 결정
- 한국의 동유럽 투자는 일부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
 - 최근 3년간 동유럽 투자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3개국에 집중(동유럽 투자의 78% 차지)

한국의 對EU 투자의 국가별 추이(신고기준)

(천 달러, %)

		2001-2003년	2004-2006년	1968-2006년
서유럽국가	독일	298,497	314,695	1,496,972
	영국	515,717	537,259	2,787,089
	프랑스	140,444	92,496	667,344
	이탈리아	187,073	27,150	344,383
	스페인	59,274	15,650	207,477
	네덜란드	2,163,952	298,763	2,971,678
	오스트리아	40,156	762	83,896
	벨기에	75,991	4,334	158,026
	스웨덴	10,711	13,130	43,972
	핀란드	1,816	1,267	3,188
	덴마크	5,300	1,398	6,804
	포르투갈	27,204	18,196	221,089
	그리스	5,359	3,500	5,408
	아일랜드	918	805	56,095
	룩셈부르크	688	69,477	70,786
	소계	3,533,100	1,398,882	9,124,207
	비율	95.4%	33.2%	66.1%
	동유럽 및 기타 국가	폴란드	103,045	440,478
헝가리		44,254	102,820	316,633
체코		5,470	1,064,522	1,099,122
슬로바키아		10,695	707,146	732,621
슬로베니아		4,500	-	4,650
라트비아		-	5,189	5,189
리투아니아		300	180	2,330
루마니아		1,441	29,493	332,850
불가리아		-	300	81,989
사이프러스		-	447,763	447,827
몰타		13	20,376	25,702
소계		169,718	2,818,267	4,677,311
비율		4.6%	66.8%	33.9%
EU전체 합계		3,702,818	4,217,149	13,801,51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對EU 투자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에 집중

- 제조업분야의 투자가 80억 달러(누계기준)로 전체의 58%를 차지

- 제조업은 서유럽과 동유럽에 비슷한 규모로 투자된 반면,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서유럽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
- 동유럽 투자는 시장 확보보다 생산거점 활용이 주된 목적이어서 아직까지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

한국의 업종별 對EU 투자

(천 달러)

		제조업	도소매업	광업	서비스업	누계
서유럽국가	독일	242,816	1,055,411	-	47,837	1,346,064
	영국	1,119,188	1,350,194	212,290	70,960	2,752,632
	프랑스	338,167	249,876	-	72,201	660,244
	이탈리아	61,721	281,023	-	321	343,065
	스페인	67,622	131,474	-	4,205	203,301
	네덜란드	2,061,320	308,057	201,275	417	2,571,069
	오스트리아	15,248	67,377	-	-	82,625
	벨기에	84,015	71,617	-	414	156,046
	스웨덴	16,258	21,423	-	-	37,681
	핀란드	1,817	603	-	263	2,683
	덴마크	400	6,024	-	171	6,595
	포르투갈	201,780	19,303	-	6	221,089
	그리스	29	4,942	-	417	5,388
	아일랜드	48,507	-	-	6,625	55,132
	룩셈부르크	22,663	5,122	-	40,001	67,786
	소계	4,281,551	3,572,446	413,565	243,838	8,511,400
동유럽 및 기타 국가	폴란드	1,459,777	52,063	-	3,256	1,515,096
	헝가리	220,082	48,197	-	1,242	269,521
	체코	1,089,132	9,920	-	-	1,099,052
	슬로바키아	716,179	7,535	-	2,949	726,663
	슬로베니아	4,650	-	-	-	4,650
	라트비아	-	5,189	-	-	5,189
	리투아니아	2,330	-	-	-	2,330
	루마니아	319,581	13,219	-	-	332,800
	불가리아	3,260	1,024	-	-	4,284
	사이프러스	250	-	447,577	-	447,827
	몰타	2,196	-	-	-	2,196
		소계	3,817,437	137,147	447,577	7,44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EU의 對韓 투자

□ EU는 對韓 외국인직접투자의 1/3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

- EU의 對韓 투자 누계액은 2006년까지 424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1,267억 달러)의 33.4%를 차지
- 미국의 對韓 투자는 366억 달러로 28.9%, 일본의 對韓 투자는 176억 달러로 13.9%를 차지

주요국의 對韓 투자 추이

(백만 달러, %)

	EU	미국	일본	전체
누계 (1962-2006)	42,363	36,631	17,646	126,743
	33.4	28.9	13.9	100.0%
2001	3,053	3,881	776	11,286
	27.1	34.4	6.9	100.0%
2002	1,680	4,490	1,403	9,092
	18.5	49.4	15.4	100.0%
2003	3,063	1,242	541	6,470
	47.3	19.2	8.4	100.0%
2004	3,933	4,717	1,337	12,792
	30.7	36.9	10.5%	100.0%
2005	4,780	2,689	1,878	11,563
	41.3	23.3	16.2%	100.0%
2006	5,939	1,701	1,146	11,233
	52.9	15.1	1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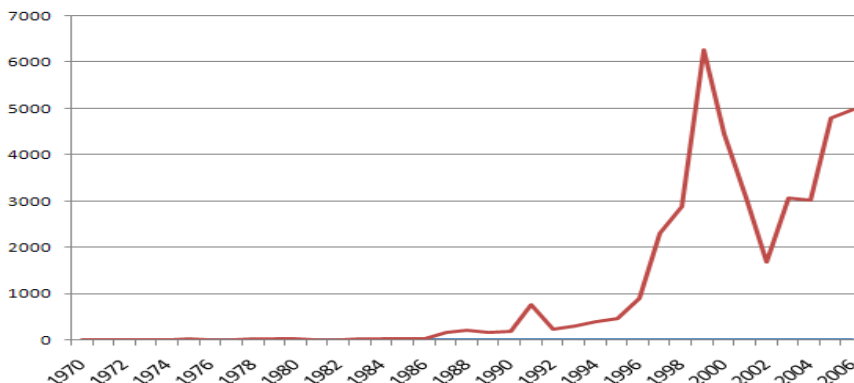
자료: 산업자원부

□ EU의 對韓 투자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

- EU의 對韓 투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다음 한 차례 조정기를 거쳤으나 이후 다시 가파른 상승세
- 1999년의 투자 급증 이유는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TFT-LCD 분야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각각 16억 달러와 11억 달러를 투자한 데 기인

EU의 對韓 투자 추이

(백만달러)



자료: 산업자원부

□ 2006년에는 EU의 투자가 한국의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

- 2005년 이래 對韓 투자규모 면에서 EU와 미국의 격차가 확대
 - EU의 對韓 투자는 지난 5년간 꾸준히 1,2위를 유지
- 2006년 EU의 對韓 투자는 59.4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112.3억 달러)의 52.9%를 차지
 - 같은 해 미국의 對韓 투자는 전체의 15.1%, 일본의 對韓 투자는 10.2%

2006년 주요국의 對韓 투자 현황

(백만 달러, %)

국가	EU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전체
금액	5,939	1,701	1,146	925	556	11,233
비중	52.9	15.1	10.2	8.2	4.9	100.0

자료: 산업자원부

□ 서유럽 6개국이 對韓 투자를 주도

- 1962~2006년 동안 EU의 對韓 투자는 네덜란드(32.5%), 독일(17.2%), 영국(15.3%), 프랑스(11.1%), 벨기에(7.4%), 스웨덴(6.7%)이 주도
- 2001년 이후에는 영국과 스웨덴의 對韓 투자가 급증

- 2001년 이후 네덜란드(22.7%), 영국(22.6%), 독일(12.4%), 스웨덴(10.8%), 벨기에(10.8%), 프랑스(9.5%)의 순으로 비중이 형성

EU 회원국별 對韓 투자 현황

(천 달러)

		1962~2006년		2001~200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서유럽국가	독일	7,279,326	17.2%	2,788,836	12.4%
	영국	6,490,489	15.3%	5,074,212	22.6%
	프랑스	4,711,640	11.1%	2,126,262	9.5%
	이탈리아	138,164	0.3%	32,210	0.1%
	스페인	128,162	0.3%	99,396	0.4%
	네덜란드	13,775,430	32.5%	5,104,354	22.7%
	오스트리아	38,326	0.1%	10,127	0.0%
	벨기에	3,121,513	7.4%	2,420,495	10.8%
	스웨덴	2,838,775	6.7%	2,426,008	10.8%
	핀란드	83,578	0.2%	38,780	0.2%
	덴마크	170,513	0.4%	27,278	0.1%
	포르투갈	146,246	0.3%	146,246	0.7%
	그리스	2,240	0.0%	0	0.0%
	아일랜드	2,075,532	4.9%	897,189	4.0%
	룩셈부르크	905,144	2.1%	817,331	3.6%
	소계	41,905,076	98.9%	22,008,724	98.0%
동유럽 및 기타 국가	폴란드	435	0.0%	435	0.0%
	헝가리	115,372	0.3%	104,883	0.5%
	체코	71	0.0%	0	0.0%
	슬로베니아	8,352	0.0%	3,602	0.0%
	리투아니아	145	0.0%	40	0.0%
	사이프러스	112,017	0.3%	111,615	0.5%
	몰타	221,210	0.5%	221,210	1.0%
	소계	457,601	1.1%	441,784	2.0%
	총계	42,362,677	100.0%	22,450,508	100.0%

자료: 산업자원부

□ 2001~06년 EU의 對韓 투자는 서비스분야가 전체의 58.9%를 차지

- 투자 누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모두 48% 내외로 비슷하지만, 2000년 이후 서비스업 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
- 2001~06년 서비스업 비중은 59%인 반면 제조업 비중은 38%로 감소

- 서비스분야 중 금융·보험이 33.2%로 최대 투자분야이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10.2%), 비즈니스 서비스(3.4%)의 순
-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전기전자가 압도적인 비중(18.6%)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6.5%)과 운송기계(4.0%)가 그 뒤를 잇고 있음

EU의 업종별 對韓 투자 현황

(천 달러, %)

	1962-2006		2001-2006	
	금액(누계)	비중	금액(누계)	비중
서비스업 전체	20,601,484	48.6%	13,222,910	58.9%
도·소매(유통)	5,785,666	13.7%	2,286,998	10.2%
음식·숙박	502,158	1.2%	402,188	1.8%
운수·창고(물류)	1,222,178	2.9%	1,130,926	5.0%
통신	198,437	0.5%	160,023	0.7%
금융·보험	10,262,126	24.2%	7,462,597	33.2%
부동산·임대	955,710	2.3%	503,792	2.2%
비즈니스서비스업	1,073,513	2.5%	757,539	3.4%
문화·오락	450,939	1.1%	425,834	1.9%
공공·기타서비스	150,757	0.4%	93,013	0.4%
제조업 전체	20,527,381	48.5%	8,504,438	37.9%
식품	1,862,339	4.4%	713,145	3.2%
섬유·직물·의류	347,453	0.8%	293,836	1.3%
제지·목재	393,931	0.9%	121,782	0.5%
화학	4,534,252	10.7%	1,449,200	6.5%
의약	596,020	1.4%	173,076	0.8%
비금속광물	528,634	1.2%	54,822	0.2%
금속	397,531	0.9%	188,856	0.8%
기계·장비	1,469,495	3.5%	339,401	1.5%
전기·전자	7,437,580	17.6%	4,171,359	18.6%
운송용 기계	2,755,482	6.5%	904,922	4.0%
기타제조	204,664	0.5%	94,040	0.4%
전기·가스·수도·건설	960,301	2.3%	722,807	3.2%
전기·가스	562,348	1.3%	370,651	1.7%
수도	66,150	0.2%	66,150	0.3%
종합건설	326,795	0.8%	285,461	1.3%
전문직별 건설	5,009	0.0%	545	0.0%
농·축·수산·광업	273,510	0.6%	352	0.0%
농·축·임업	352	0.0%	312	0.0%
어업	40	0.0%	40	0.0%
광업	273,118	0.6%		0.0%
총계	42,362,677	100.0%	22,450,508	100.0%

자료: 산업자원부

2. 한-EU FTA의 필요성

한국 : 세계 최대시장 확보 및 균형적인 경제관계 모색

□ EU는 세계경제의 28.9%를 차지하는 최대 단일경제권

- EU는 2006년 기준으로 경상 GDP 14조 5,270억 달러, 인구 4억 9,300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
 - GDP로는 미국(13조 2,450억 달러)의 1.1배, 일본(4조 3,670억 달러)의 3.3배
- 2006년 기준으로 평균 인당 GDP는 29,465달러
 - 서유럽 15개국의 인당 GDP는 34,898달러로 미국(44,190달러)의 79%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본(34,188달러)을 능가
- 상품수입 규모(2005년 기준)는 4조 1,354억 달러(세계수입의 39.3%)로 세계 1위
 - 하지만 역내수입(2조 6,729억 달러, 총수입의 64.1%)을 제외한 역외수입 규모만을 보면, 1조 4,625억 달러(세계 13.9%)로 미국 1조 7,320억 달러(세계의 16.5%)의 84% 수준

지역별 경제비중

	단위	EU			북미		아시아	
		EU15	EU12	EU전체	NAFTA	미국	일본	중국
GDP	10억달러	13,597	930	14,527	15,354	13,245	4,367	2,630
인구	백만명	389.6	103.4	493.0	436.4	300	128	1,314
인당GDP	달러	34,898	8,991	29,465	35,179	44,190	34,188	2,001
상품수출	10억달러	-	-	4,001	1,478	904	595	762
상품수입	10억달러	-	-	4,135	2,285	1,732	515	660

주: 1) 상품 수출입의 EU전체 통계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EU25개국 데이터

2) EU15는 기존의 서유럽 회원국, EU12는 2004년 이후 신규 가입한 국가들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7

WTO, World Trade Statistics 2006

- 한국은 EU시장 점유율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
 - 한국의 對EU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2%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
 -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개도국들이 빠른 속도로 EU시장 내 선진국들의 점유율을 잠식
 - 역내수입 비중이 6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역외수입 시장을 놓고 수출국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 한국제품이 EU내 시장점유율에서 “摩의 3% 壁”을 돌파하려면 한-EU FTA와 같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

- 한-EU FTA는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
 - 한국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샌드위치 상황을 벗어나려면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 선진화가 필요
 -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절실
 - 한-EU FTA를 통해 한-미 FTA의 미흡한 점을 보완
 - 일부 투자 및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추가 개방이 필요

- 미국-아시아-유럽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경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EU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할 필요
 - 한-미 FTA 발효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심화될 대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EU와의 관계 강화가 요구

EU: 아시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급성장하는 아시아시장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FTA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개도국들과 과거 식민지 국가들의 정치 안정이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체결되었던 기존의特惠무역협정이 EU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EU내에서 증가
-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FTA가 잇달아 체결되면서 EU의 FTA정책에 의문을 제기
 - 한-미, 한-ASEAN, 일-싱가포르 등
- 아시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 특히 한국은 EU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

- EU는 한국을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지니면서 연평균 4~5% 성장하는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
 - 향후 20년간 한국은 6위의 시장잠재력을 보유(EU집행위)
- 한-미 FTA에 이어 한-ASEAN, 한-중 FTA마저 체결될 경우 EU제품은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
 - 특히 한-미 FTA 체결이 한국과의 FTA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
- 한국은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아시아시장에 진출하려는 EU 다국적기업들의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로서도 중용

3. 추진 경과

2006년 7, 9월에 1, 2차 예비회담을 개최

- 2006년 5월 16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한-EU FTA의 추진 가능성을 처음 논의
- 한-미 FTA 협상 출범에 자극 받아 EU는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

- 2006년 6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FTA의 필요성을 재확인
 - 양자 통상현안, 한-EU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고 WTO/DDA, 지역통합, ASEM,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2006년 7월과 9월 브뤼셀에서 1, 2차 한-EU FTA 예비회담 개최
 - 7월 18~19일에 열린 1차 예비회담에서는 비관세장벽/규제, 기술표준(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정부조달, 서비스 등 5개 분야를 논의
 - 9월 26~27일에 열린 2차 예비회담에서는 상품/원산지/통관절차,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경쟁, 환경, 노동 등 제1차 예비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여타 분야를 논의

- 2006년 하반기부터 한-EU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여론 수렴 및 정부 내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
 - 공청회('06.11.24), FTA민간자문위원회('06.12.6), FTA실무추진회의('06.11.7), FTA추진위원회('07.4.16) 등을 개최

- EU집행위도 11월 13일에 新통상정책("Global Europe")을 채택하는 한편 EU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한-EU FTA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
 - EU 차원에서 중국을 중시하고 한국, 인도, ASEAN과의 FTA 추진 의사를 명문화
 -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¹⁴⁾ 대표단은 2007년 3월 21~22일 EU집행위, 유럽의회, 주요 협회 등을 방문하여 '2006년 무역장벽백서'를 전달하고 한국과의 FTA 협상 문제를 논의

14) EUCCK는 'the European Union Chambers of Commerce in Korea'의 약자

- 한국시장 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10페이지에 달하는 설문지¹⁵⁾를 발송하여 업계나 NGO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5월 7~11일에 1차 협상 개최

- 4.23(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일반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한국, ASEAN, 인도와의 FTA 협상 지침안을 승인
 - EU집행위는 2007년 4월 23일 각료이사회로부터 인도, 한국 및 ASEAN과의 FTA 협상권한(negotiating mandates)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음
 - 한-EU FTA 협상 출범을 위한 EU측 내부절차가 완료
 - EU는 “이들 협상은 WTO와 양립 가능한 새로운 FTA(new WTO-compatible FTA)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새로운 FTA는 야심차고 포괄적(ambitious and comprehensive)이며, 상품, 서비스, 투자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포함
 - 특히 비관세장벽의 제거에 중점
 - 특히 한국과의 FTA에서는 “보다 폭넓은 협정을 통해 정치적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기존의 비관세장벽 제거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
- 한국도 5월 1일(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EU FTA 협상 개시를 최종 승인
- 5월 7~11일에 한-EU FTA 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
 - 5월 6일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방한하여 김현중 통상교섭 본부장과 함께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

15) 업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발송한 질문서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투자, 기타 규범(지적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지속가능한 개발(환경, 사회/노동)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출기한은 2007년 5월 1일까지임. EU는 한국, 인도, ASEAN, 우크라이나, 안데안공동체, 中美國가들을 FTA 협상대상국으로 삼고 있음

II. 분야별 주요 쟁점

1. 한국과 EU의 FTA 전략

한국은 동북아 허브를 실현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 2003년 8월 “FTA 추진로드맵”을 통해 FTA정책의 청사진을 제시

-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가 FTA 추진의 근본 목적
 -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 피해 최소화(소극적 동기)
 -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적극적 동기)

- 대륙별 교두보 국가 → 거대경제권 → 신흥 유망국가 순으로 FTA 추진
 - 대륙별 교두보 국가 : 칠레(중남미), 싱가포르(동남아), EFTA(유럽)
 - 거대경제권 : 미국, EU, 중국, ASEAN
 - 신흥 유망국가 : 인도, 메르코수르

□ 한국 정부는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FTA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 FTA 후발국으로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목적
- 칠레, 싱가포르, EFTA와는 이미 FTA를 체결하여 협정이 발효
 - ASEAN과는 상품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투자 및 서비스분야에서도 협상을 진행 중
- 한-미 FTA를 체결한 데 이어 EU와도 FTA 협상을 개시

- 미국, EU라는 양대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시 한국은 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할 수 있게 됨
-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국, 일본보다 먼저 체결할 경우 한-중 FTA는 물론 한-일 FTA 체결을 주도 가능

한국의 FTA 추진 현황

협상국	1차 협상	현재 상황	서명일	비준 통과일	발효일
칠레	1999.12	-	2003.2.15	2004.2.16	2004.4.1
싱가포르	2004.1	-	2005.8.4	2005.12.1	2006.3.2
EFTA	2005.1	-	2005.12.15	2006.6.30	2006.9.1
ASEAN	2005.2	서비스 및 투자분야 (7차 협상)	2006.8.24 (상품협정 서명)	-	상품협정 (2007.6.1)
미국	2005.6	-	2007.4.2	-	-
인도(CEPA)	2006.3	-	-	-	-
일본	2003.12	6차 협상 (2004.11)	-	-	-
멕시코(SECA)	2006.2	3차 협상(2006.6)	-	-	-
캐나다	2005.7	10차 협상(2007.4)	-	-	-
중국	산학연 공동연구 1차 회의(2007.3)	-	-	-	-

자료 : 외교통상부

EU는 새로운 개념의 포괄적인 FTA협정을 희망

□ EU는 전통적으로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협상체제를 지지

- EU는 WTO 다자체제가 국제무역을 규율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협상채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후 다자간 협상에 전념하기 위해 새로운 FTA협상에 나서는 것을 자제¹⁶⁾

16) 이러한 전략을 前 대외통상담당 집행위원이자 현 WTO사무총장인 파스칼 라미(Pascal Lamy)의 이름을 따서 '라미독트린(Lamy doctrine)'이라고 부름

- 2002년 3월에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 협상을 재개한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협상을 개시하지 않음

□ EU가 개도국이나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체결해온 지역무역협정(RTA)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특혜무역협정(PTA)이 대부분

EU의 특혜무역협정(PTA) 체결 현황

협정 형태	대상국가		협정(발효 일시)
관세동맹	안도라		Exchange of Letters(1991)
	터키		Decision of EC-Turkey Association Council(1995)
자유무역협정	유럽국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EEA(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1994)
		스위스, 덴마크령 페로제도	Free Trade Agreement(1973, 1997)
	지중해 국가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Association Agreement(Euro-Med. Agreement)(각기 상이)
	기타 국가	칠레	Association Agreement(2003)
		멕시코	Association Agreement(Global Agreement)(2000)
		남아프리카공화국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2000)
FTA 협상 중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Political and Economic Association Agreement
	GCC(걸프 협력회의)	UAE,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Cooperation and Free Trade Agreement
	ACP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연안 78개국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otonou Agreement)
기타 무역협정	CIS	러시아 제외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러시아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1997)

자료 : WTO

- EU는 가장 많은 지역무역협정(RTA)을 체결
- EU는 이들 국가에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함으로써 EU의 총 역외수입 중 지역무역협정 대상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0~80%에 이릅니다

- ACP¹⁷⁾ 국가와는 역사적 관계 때문에, 지중해 연안국과는 지리적 인접성과 지역내 정치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
- 메르코수르(Mercosur)와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지역통합을 촉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 최근 EU는 아시아와 FTA 전략을 중시하는 新통상정책을 채택

- EU집행위는 기존의 FTA정책이 EU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재계의 비판을 수용하여 FTA정책을 실리 위주로 전환¹⁸⁾
- 각료이사회는 2006년 11월 13일에 ‘新통상정책(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을 채택
 - 통상정책과 新리스본전략¹⁹⁾을 연계 추진하여 역내 기업 및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
- EU는 DDA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FTA협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
 - 다자간 협상채널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의 시장개방을 유도하고 EU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FTA 추진의 목적
- 新통상정책의 채택으로 EU집행위는 그동안 소원했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됨

□ 향후 EU는 FTA가 EU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협상국을 선정할 방침

- 협상국 선정 기준은 주로 경제적인 기준
 - 공산품의 실질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정도

17)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연안 78개국

18)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은 2004년 10월 통상담당 집행위원으로 취임한 이래 실리 위주의 통상정책으로 전환

19) 2010년까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경제를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EU가 추진 중인 新리스본전략은 개방된 시장경제체제를 지향

-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벽 정도
 - 협상파트너의 경제적 잠재력
 - 주요 교역파트너 간의 FTA 체결이나 앞으로의 체결 가능성으로 인해 EU 기업들이 배제될 리스크
 - EU의 현재와 미래 시장 전망
- 이 기준에 따라 한국, ASEAN, 인도를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²⁰⁾
- 메르코수르, 러시아, GCC 등도 장기적으로 EU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
 - 중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상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중하게 협상을 추진할 방침²¹⁾

EU 교역파트너의 시장잠재력과 주요 경제지표(2005년)

	시장잠재력 ^(*)	GDP	연평균성장률	對EU 교역	EU무역내 비중
	(2005-25년)		(2005-25년)		
	10억 유로	10억 유로	%	10억 유로	%
미국	449	10,144	3.2	412.7	18.5
중국	204	1,573	6.6	209.4	9.4
일본	74	3,920	1.6	116.4	5.2
인도	58	607	5.5	40.0	1.8
ASEAN	57	714	4.9	115.1	5.2
한국	45	598	4.7	53.3	2.4
메르코수르	35	677	3.6	51.0	2.3
캐나다	28	849	2.6	40.8	1.8
GCC	27	412	4.3	87.6	3.9
러시아	21	526	3.0	163.0	7.3
대만	18	268	4.3	36.5	1.6
호주	17	526	2.5	30.1	1.4
홍콩	12	149	4.8	31.1	1.4
이란	10	151	4.3	24.2	1.1
우크라이나	5	61	4.9	20.7	0.9

주 : (*)는 시장규모(경제규모×성장률)의 누적 변화

자료 : European Commission,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20) EU는 아시아의 FTA 허브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 시장규모와 시장 진입장벽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FTA 체결의 메리트가 적은 것으로 판단

21) EU는 新통상정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의 성장잠재력을 중시하여 對中 관계의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였음. 그러나 이른 시일 안에 중국과의 FTA협상이 착수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 이유는 EU의 對中 무역적자(2005년 1,063억 유로)에 대한 EU내 반감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임

-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투입되어야 하는 인적 및 재정적 자원 문제도 고려한다는 방침
 - 양적 목표 때문에 FTA 협상의 효율성을 희생해서는 안 되므로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협상에 나설 전망

- EU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
 - 기존의 다자체제에서 개방이 불충분했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직접투자(FDI), 정부조달시장,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상대국에 광범위한 시장개방을 요구할 방침

 - 새로운 차원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
 - 쿼터와 허가 등 각종 수입수량제한 철폐
 - 모든 형태의 관세, 세금, 수수료 및 수입제한 철폐
 - 강력한 IPR(지적재산권) 보호
 - 노동 및 환경보호기준 뿐만 아니라 경쟁 및 지배구조 개선
 - 원산지규정 단순화

 - 유럽경영자연합회(UNICE)²²⁾는 EU집행위에 포괄적인 FTA 협상을 주문하는 보고서를 채택

- EU는 미국과는 달리 모델협정(Model Agreement)을 갖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입장
 - 미국은 NAFTA를 협상모델로 하여 FTA 협상에 나서지만, EU는 협상상대국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특정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

 - 하지만 EU는 EU-칠레 FTA를 가장 성공적인 협정으로 간주하고 있어 한-EU FTA의 기본모델로 활용할 가능성

22) 유럽경영자연합회(UNICE)는 2007년 1월부터 명칭을 'Business Europe'으로 변경하였음. UNICE가 제시한FTA전략은 'UNICE Strategy on an EU Approach to Free Trade Agreements', 2006.12.7 참조

유럽경영자연합회(UNICE)가 제시한 FTA협상 분야

분야	주요 내용
상품 무역	수입관세와 원산지 규정 - 적용 관세율의 문제점 - 관세인하 방식 : 프런트로딩(조기 관세 철폐), 백로딩(일정기간 내 점진적 관세인하) - 관세분류(tariff classification)상의 문제점 - FTA 협상에 도입되어야 할 특혜 원산지 규정
	수출 제한 - 수출관세, VAT 리베이트제도, 허가, 차별적인 촉진제도
	수출입 절차,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 - 무역규정의 입수 애로, 서류요건, 수수료, 검사 및 통제, 기타 세관 절차, 차별적 대우, 관세 평가, 세관 협력 등
	국내 규정과 세계 측면에서 차별대우 및 투명성 - 차별대우 분야, 투명성 결여 분야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反덤핑, 反보조금) - 무역구제조치의 남용 여부 - 보조금, 가격정책 등 시장왜곡 사례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공산품) - 적합성평가시스템, 기술규격,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 관련 - 입법과정의 투명성,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불충분한 이행 기간, 차별대우, 라벨링, 불필요한 표준, 적합성 평가, 서류요구 등의 문제
	위생 및 검역조치(SPS) (농산품) - 현재 수출 농업제품(동물 및 동물제품, 식물 및 식품, 어업제품) - 앞으로 수출 예정 농업제품 - 수출에 적용되는(적용될) 위생 및 동물검역조치(SPS) 장벽 - 법규의 투명성, 풍토병, 수출기업 사전 등록제, 절차 지연 등
서비스무역과 투자	cross-border 서비스무역(Mode1)과 관련한 장벽
	설립 장벽(Mode3)
	개인의 사업 목적의 일시 이동(Mode4)을 가로막는 장벽
기타 규범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문제점 -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특허권, 데이터보호 중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 - FTA 협상시 관찰해야 할 사항 -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 ; GIs)의 보호 내용
	경쟁정책 - 반경쟁적 시장 관행(카르텔, 지배적 지위 남용, 수직적 또는 수평적 경쟁 제한) - 경쟁당국의 시정 조치 - 정부의 수출보조금 지원(수출 리베이트, 세금 및 관세 면제, 시장금리 보다 저렴한 대출 등)
	정부조달 -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입찰 절차의 투명성, 선정시스템의 접근 용이성, 국제기준과는 다른 기술 표준 적용 여부, 리뷰메커니즘의 효율성, 입찰 절차와 관련한 단일창구, 내국민 및 최혜국대우(MFN) - 최우선 분야 및 입찰기관 - 공공계약 입찰시 작용하는 법률 및 시장접근 장벽 - 중앙정부, 지자체, 정부산하 기관 등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시 직면하는 환경 관련 이슈 - 환경법규 이행에 대한 만족도 - 환경챕터(environment chapter)에 포함되어야 할 분야(다자간 환경협정 체결, 국내 법규의 철저한 이행, 국제 환경협약의 철저한 준수)
	사회 및 노동 - 무역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주요 사회 및 노동이슈 - 사회 및 노동관련 법규의 만족도 - 최우선 분야(ILO 협약 체결, 국내 법규 이행, ILO 규정 준수) - 사회, 노동법규 준수를 위해 FTA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료: UNICE, 'UNICE Strategy on an EU Approach to Free Trade Agreements', 2006.12.7

2. 분야별 주요 쟁점²³⁾

관세장벽

- 한국과 EU 모두 수입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
 - EU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
 - EU의 평균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MFN Applied Tariffs)은 4.2%
미국은 3.7%, 일본은 3.1%
 - 한국의 평균 실행관세율도 11.2%로 상당히 높은 편²⁴⁾

한국과 EU의 업종별 평균관세율(%) 비교

	한국	EU
전체 평균	11.2	4.2
농업	41.6	5.9
비농업	6.7	4.0
목재·펄프	2.4	1.1
섬유의류	10.1	7.9
가죽·신발	7.9	4.2
철강	4.3	1.9
석유화학	6.4	4.5(ABS; 6.5)
자동차	8.0	10~22(승용차; 10)
기계류	6.4	1.9
전기전자	6.0	2.5
기타 제조업	6.4	2.5

자료 : WTO

- 이에 따라 FTA 체결시 관세율 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EU의 對韓 수입관세

- 화학 및 플라스틱은 대부분의 EU 관세가 6.5%

23) 1차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논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도 포함

24) 한-EU 교역액을 가중치로 계산한 가중평균 관세율은 한국 7.1%, EU 4.4%로 계산(Copenhagen Economics)

- 오일이 6억 달러의 수출로 최대 수출품목일 정도로 한국의 수출규모가 많지 않은 분야
- ABS, PET 등 산업용 화학원료가 1억 달러 이상 수출
- 나머지 품목들은 對EU 경쟁력이 강하지 않아 수출이 소규모로 이루어짐
- 수입관세가 대부분 6.5%로 FTA를 통해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수출 경쟁력 제고로 수출증가 예상

□ 고무 및 섬유·의류의 경우 관세율이 높아 주요 관심품목

- 자동차용 타이어(관세 4.5%)가 최대 수출품목(6.8억 달러)으로 관세인하 시 수출증대 효과 예상
 - 한국타이어는 2007년 하반기에 헝가리 타이어공장을 가동할 예정
- 의류는 높은 수입관세(12%)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으로 수출규모가 미미
 - 국내업체들은 임금상승과 쿼터 규제를 피해 중국, 동남아, 서남아국가로 생산 공장을 이전한 결과
- 현재 8%의 수입관세가 적용되는 편·직물류의 경우 관세인하로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전망
- 4%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폴리에스테르섬유(수출액 1.5억 달러)는 관세인하 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
 - 현재 EU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
- 섬유·의류에 대한 쿼터제 철폐로 향후 반덤핑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
 - WTO의 섬유·의류협정이 2004년 말에 만료되어 WTO 회원국들에 대한 수입쿼터를 철폐
 - 하지만 중국산 10대 품목(T셔츠, 남성용 바지, 블라우스, 침대보, 드레스, 브래지어, 식탁보, cotton fabrics 등)에 대해서는 2007년 말까지 일정 한도 내에서 수입물량을 제한하고 있음

- 200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쿼터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섬유류의 對EU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
- 따라서 섬유류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및 반덤핑규제나 세이프가드 등 EU의 무역방어조치가 강화될 가능성

□ 금속 및 비철금속은 대부분 무관세품목

-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세로 수출 가능
 - 평판압연제품과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이 금속 및 비철금속 분야의 주력 수출제품
- 관세인하의 혜택이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

□ 기계류는 불베어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低세율 품목

- 컴퓨터부품, 컴퓨터기억장치(HDD 등), 건설 중장비 등 주력 수출품들은 모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어 FTA 효과가 미미할 전망
- 세탁기(2.7%), 공기청정기(1.7%), 에어컨(2.2%), 냉장고(1.9%) 등 백색가전제품은 2% 내외의 관세율이 적용
- 불베어링(6,000만 달러 수출)은 8%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어 관세인하 혜택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

□ CTV, 캠코더 등 AV제품은 14%의 높은 관세로 인해 주요 관심품목

- 무선전화기(66.2억 달러), 반도체(7.9억 달러), PC용 모니터 등 ICT제품은 현재 무관세로 수출 → FTA 영향 미미
- CTV, CRT, 캠코더, TV용 모니터 등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14%의 높은 관세가 부과

- CTV, CRT 등 AV제품의 對EU 수출은 한국기업의 현지공장 건설에 의한 역내생산으로 대체되어 규모가 크지 않음
 - DVD 및 녹음재생기(CD 플레이어 등)에 대한 수입관세는 각각 13.9%와 12%에 달해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증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CTV 부품 등 전기전자 부품에 대해 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가 인하될 경우 현지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기여
 - 기타 품목들의 수입관세는 3~4%로 수출물량도 많지 않으므로 조기 관세철폐가 가능
- 10%의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최대 관심품목
- 2006년 승용차 및 화물차의 수출규모는 총 91.3억 달러로 對EU 최대 수출품목이며, 현재 수입관세는 10%가 적용
 -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4.5%
 - 향후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에서 한국 자동차업체들의 현지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자동차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인 바 4.5%의 수입관세 인하는 큰 효과
- 선박은 무관세 품목으로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
- 무관세가 적용되는 선박(71억 달러)의 경우 FTA의 영향은 없을 전망
 - 유조선(30억 달러), 컨테이너 등 기타 선박(41.3억 달러)
- 오토바이와 정밀기기는 4% 이상의 관세가 부과
- 오토타이(3,700만 달러)와 액정디바이스(31.3억 달러)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오토바이(50~250CC) 관세율은 8%, 액정디바이스 관세율은 4.7%

한국의 對EU 수입관세

□ 식품 및 화학원료의 관세는 8~20%로 상당한 높은 상태

- 위스키류(2006년 2억 2,300만 달러 수입)와 와인(4,400만 달러)의 관세는 각각 20%, 15%로 매우 높음
 - 한국의 위스키 수입의 98%는 영국산 위스키가 차지
 - 포도주 수입은 프랑스(28.7백만 달러), 칠레(14.6), 미국(11.8), 이탈리아(8.7), 호주(6.0), 스페인(3.0), 독일(2.9) 등의 순
 - 포도주는 FTA 체결로 현재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칠레산 포도주와 경합 관계에 있어 관세인하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
- 기타 화학원료의 경우 현재 8%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EU산 제품의 경쟁력을 고려할 경우 관세 인하 시 수입 증가가 예상

□ 의약품 및 플라스틱류는 대부분 8%의 관세가 부과

-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8%의 관세가 부과되나, 백신(무관세), 윤활유첨가제(5%), 조제점결제(5%)는 예외
- 관세인하 시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의약품 및 화장품 등 EU 제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
 - 수입화장품 시장을 놓고 프랑스, 미국, 일본이 3파전 양상 → EU는 미국 수준의 관세인하를 요구할 전망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영국이 5대 향수 수출국
 -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독일산 조제점결제는 관세인하 시 가격경쟁력이 제고

□ 고무 및 의류섬유도 두 자리 수 이상의 관세가 부과

- 구두와 기타 신발(등산화, 일반화, 운동화), 의류에 대한 수입관세는 13%로 높은 편

- 이탈리아는 최대 구두 수출국이며, 기타 신발에서도 중국에 이어 2위 수출국으로 관세 인하 시 큰 폭의 수입 증가가 예상
- 일반 도자기는 중국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2,3위 수출국으로서, EU 수출(6,100만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8%의 관세 인하 시 상당한 혜택 예상

□ 금속 및 비철금속은 무관세이거나 비교적 저율의 관세 부과

- 비철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무관세로 FTA의 영향이 없을 전망
- 반도체 제조용 금 또는 백금(2.5억 달러)은 독일이 최대 수출국으로 관세는 3%
-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경합관계에 있는 알루미늄합금은 관세가 1%에 불과해 독일기업의 경쟁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

□ 기계류는 10% 안팎의 관세가 부과

-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8%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 인하 시 상당한 수입 증가 예상
- 한국시장에서 일본, 독일, 미국이 3파전을 전개하는 양상으로 미국에 이어 EU마저 한국과 FTA 체결에 성공할 경우 수입관세 인하로 일본의 기계류 수출은 타격 예상
 - 일본산 기계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전망
- 불베어링은 8~13%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미국이 치열하게 경합 중
 - 최근 중국과 미국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 일본과 독일의 증가세는 저조 → 관세 인하 시 독일과 프랑스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

- 전기전자제품은 8%의 관세부과 품목이나 IT제품은 무관세품목
 -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8%의 관세가 부과
 - IT제품은 1997년 WTO의 ITA협정에 의해 무관세화
 - 전기전자는 EU 국가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
 -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對韓 부품 수출이 많음
 - 집적회로 등 IT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EU회원국들의 수출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음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입관세는 8%
 - 수입 승용차시장은 독일과 일본의 양강 구도에 미국이 가세하는 형국
 - 1,500~3,000CC 수입 승용차의 시장점유율은 독일 63.9%, 일본 17.5%, 미국 5.2%
 - 3,000CC 이상 승용차의 경우는 독일 61.5%, 일본 26.5%, 미국 5.2%
 - 1,500~2,500CC 디젤 승용차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웨덴이 주요 수출국이며, 2,500CC 이상 디젤 승용차는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가 주요 수출국
 - 한국과 EU 양측 모두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빅딜이 요구되는 분야
 - EU는 미국에 상응하는 관세양허를 한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

< 한-미 FTA의 자동차 수입관세 관련 합의 내용 >

- ◇ 3,000CC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은 즉시 관세 철폐
- ◇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내 관세 철폐
- ◇ 픽업트럭 관세 10년내 균등 철폐

- 독일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관세양허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
 -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미국에 상응하는 수준만큼 인하하는 대가로 독일을 설득하여 다른 분야의 관세인하를 요구할 필요

□ 정밀기기는 대부분의 품목에 8%의 관세 부과

- 다만 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하는 기타 기기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
 - 네덜란드가 최대 수출국(13.6억 달러)
- 의료용 정밀기기는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일본이 경합 중으로 FTA 타결 시 일본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예상
 - 지멘스, 필립스 등이 EU의 주요 생산업체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TB)의 철폐는 한-EU 협상의 주요 의제

- 한국과 EU는 FTA 협상에서 관세인하는 물론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주력할 전망
 - 통관절차,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SPS), 지적재산권, 투자 및 경쟁 정책, 환경규제, 정부조달시장 등

□ 제약, 화장품, 자동차, 서비스시장, 농산물 등의 분야에서 앞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 EU는 화장품의 복잡한 규정과 이중 시험검사 등의 비관세장벽 완화,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장착 기간 유예²⁵⁾, 법률서비스 시장

25) 한국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모든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에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법을 시행하려 했음. 하지만 OBD 장착 비용이 차종에 따라 대당 70~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럽 자동차업계는 시행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왔음.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6년 12월에 수입차에 대해 연간 1만대 미만의 제조·판매회사는 2007년 50%, 2008년 75%,

의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법안의 강력한 실행 등을 요구

-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의 ‘2006년 무역장벽백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부록1 참조)

EU가 규정하는 비관세장벽

분야	주요 내용
통관절차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을 가로막는 수출입 및 통관제도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불필요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 검사 및 인증 등 적합성 평가절차
위생 및 검역조치 (SPS)	건강 및 안전기준에 관한 기존의 WTO 원칙에 위배되는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Restrictions : SPS)
수출 제한	원자재, 특히 핵심 원자재와 금속제품의 수출을 제한하여 국제적으로 가격 인상을 야기하는 행위
지적재산권(IPR)	지적재산권(원산지 표시 포함) 보호 규정의 미흡, 이행 및 집행상 문제점 - 해적판 및 모조품 규제
서비스무역 장벽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합작(J/V) 의무화, 차별 대우
투자 제한	특정 분야의 외국인투자 제한, 투자지분 및 소유권 제한, 차별 대우 (세제 등)
정부조달	제한적인 정부조달법으로 정부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입찰을 제한
무역구제조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Trade Defence Instruments)의 무분별한 사용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의 불공정한 지원이 자유무역에 장애물로 작용

자료 : European Commission

① 통관절차²⁶⁾

□ 국제무역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비차별적인 통관절차가 중요

- 특히 경기사이클에 민감한 IT산업이나 just-in-time 재고 및 global supply chain 방식에 의존하는 가전산업은 통관절차가 매우 중요

2009년 100%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완화했음. 또한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서는 미국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OBD 장착 의무를 2008년까지 면제해 주었음
26) 국제협정에서는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 분야에서 다름

- WTO에서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개정된 교토협정(Revised Kyoto Convention)²⁷⁾을 준수하도록 요구
 - 통관절차 간소화, 세관정보 및 결정의 시의적절한 공표 및 공개, 수출입 제도와 관련한 수수료 제도, WCO의 HS분류협정 채택 등을 규정

한국측 요구사항

- 통관절차는 EU보다 한국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분야
 -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통합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EU의 관세행정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EU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세관행정의 개선을 요구해야 함
 - EU는 EU공동체 관세규정(Council Regulation 2913/92)을 통해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명시
 - 하지만 EU 관세 및 통관 관련 규정절차에 대한 단일기구의 부재로 인해 원산지 판정, 품목 분류, 통관 소요시간, 세관의 애로사항 처리 태도 등 세관업무가 회원국마다 상이하여 피해를 초래
 - 2003년 10월 영국 세관당국의 하이닉스 D-Ram 모듈 원산지 분류 오류 사례
 - LCD 모니터의 회원국 세관당국 간 稅番 분류 차이로 인한 혼선 초래²⁸⁾
 - 미국은 EU 회원국들의 상이한 통관절차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하기도 하였음²⁹⁾

27) 개정된 교토협정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정의 개정안'

28) LCD 모니터를 CN 8471(PC용 모니터) 또는 CN 8528(TV 및 비디오용 모니터)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관세는 0%에서 14%로 큰 차이를 보임. 회원국의 세관당국에 따라 세 번 분류가 달라 큰 혼란을 초래함.

29) 미국은 2004년 EU 세관행정의 문제를 WTO에 제소하였으나 WTO는 2006년 11월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EU 세관행정이 WTO기준에 부합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음

□ 부적절한 稅番 분류로 인한 고율의 관세 부과 문제를 제기해야 함

- IT제품은 1997년부터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³⁰⁾에 의해 무관세화
-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의 컨버전스로 인해 IT제품과 가전제품 간 영역이 허물어지면서 자의적인 분류에 의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
 - 캠코더의 DV(Digital Video Signal) IN 기능 유무에 따라 관세를 4.9%(DV IN 기능 미보유) 또는 14%(DV IN 기능 보유)로 차등 부과
 - LCD 모니터의 TV시청 기능(TV수신 튜너 내장) 유무에 따라 無관세 또는 14% 관세 부과
 - MP3플레이어의 라디오기능 추가 여부에 따라 2% 또는 10% 관세 부과
- 2007년 1월 1일에 HS 84, 85, 90에 속한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WCO의 제품분류 체계가 HS2002에서 HS2007로 개편되면서 관세가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
 - EU는 용도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하던 대형 LCD모니터에 대해 일률적으로 14%의 관세 부과
 - 회원국의 세관당국들은 무관세 품목군에서 관세부과 품목군으로 재분류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우려

② 기술장벽(TBT)

- 제품검사, 인증 및 적합성 평가가 주요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작용
- 불필요한 제품인증 절차로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
 - 검사보고서,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 등은 상품무역의 주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작용

30)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29개국이 ITA를 체결하였으며, 199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현재 ITA 체결국은 69개국으로 증가하였고, IT제품의 97%가 무관세화되어 있음

한국측 요구사항

□ CE마크 부착 의무화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

- 공중 보건, 안전, 환경보호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전자제품의 경우 CE마크 획득에 평균 2~3개월, 자동차는 7개월 소요

□ 이밖에 품목별로 문제가 되는 기술장벽들의 개선을 요구해야 함

- 회원국이 일부 품목에 대해 요구하는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의 폐지 또는 완화 문제
- 화장품에 대한 까다로운 승인검사, 자동차 형식승인 절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장착 의무화 등도 문제 제기가 필요한 사항

EU측 요구사항

□ 품목별로 불필요한 시험 및 인증절차의 폐지 또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 주한 EU상공회의소는 ‘2006년 무역장벽백서’에서 한국의 기술장벽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가전제품 및 IT제품에 대한 복잡한 적합성 평가절차
 - 농약, 승용차(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험, 형식승인 및 안전시험), 건설 및 기계(CE 검사 및 인증), 화장품(기능성 검사, 자외선차단 성분 검사), 식음료(식품첨가물의 승인절차, 유제품 무작위검사), 의료기기(인증절차), 제약(신약 허가) 등

□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및 안전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시험 및 인증절차의 개선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전자파 적합성(EMC)과 관련한 평가 절차상의 문제점
 - 정보통신부는 전파법(Radio Wave Act)에 근거하여 제품샘플이 한국의 시험 및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

- 전자파 적합성과 안전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불만
 - 전기기기 및 재료안전법(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과 관련하여 한국 내 시험 및 인증을 위해 제품샘플을 요구하는 산업자 원부의 조치를 문제시

③ 위생 및 검역조치(SPS)

EU측 요구사항

- EU는 한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³¹⁾의 개선을 요구해올 것임
 - 한국의 SPS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EU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옴
 - 이미 1차 협상에서 돼지고기(돈육) 관련 한국의 검역기준 등을 쟁점화

 - EU-칠레 FTA 수준의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
 - 완전한 투명성 보장
 - 동등성(Equivalence)원칙³²⁾의 인정
 - 지역화(Regionalisation) 개념³³⁾의 적용

- 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SPS 이슈를 다루기 위한 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해올 것으로 예상
 - 공동관리위원회의 기능

31)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Restrictions; SPS)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되, 이를 악용하여 식품 및 농축산물 무역의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32) 수출국이 자신들의 SPS조치로 인한 보호수준과 수입국의 SPS조치에 의한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해당 위생 및 검역조치를 수입국의 규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원칙

33) 질병 발생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원칙

- SPS 규정의 적용 감시
 -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논의
 - 지역화 또는 동등성 여부 평가
 - 상호 정보교환
- 미국은 동식물 검역문제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위원회가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 앞으로 EU는 한국에게 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f Biosafety)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할 가능성
- 동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의 국제이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정서
- LMOs의 국가간 이동시 초래될 수 있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 생명공학 기술로 탄생한 LMOs의 안전한 사용, 취급 및 사용을 규정
- 사전통보동의절차, 위해성 평가,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이 포함
- 현재 EU 회원국들과 일본 등 140개국에서 발효되었으나, 한국은 2000년에 서명한 이후 법률정비작업의 지연으로 인해 비준이 안된 상태
- 미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아직未서명

④ 지적재산권(IPR)

- 지적재산권(IPR)의 침해가 선진국의 무역과 R&D 투자 노력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R&D 투자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

WTO 회원국에 대한 TRIPs 의무사항

분야	의무사항
특허권	등록일로부터 최소 20년간 보호
저작권	S/W, DB, 음악, 영화 : 50년간 보호, 방송프로그램 : 20년간 보호
상표권	최초 7년간 보호, 이후 무기한 연장 가능
반도체 회로 설계	반도체 회로 설계는 10년간 보호
지리적 표시제(GI)	원산지 허위 표시 금지
산업디자인	오리지널 산업디자인의 불법 제작, 판매, 복제를 10년간 금지
거래비밀	상업적 가치가 있는 거래비밀과 관련 정보 보호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로 인식

-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최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분류해 왔으나, 2007년에는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한 단계 낮춤³⁴⁾
 - 한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인정한 결과
- EU집행위는 한국을 지적재산권 침해 요주의국가(Priority Countries List) 중 하나로 분류
 - 지적재산권 침해 요주의국가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ASEAN, 메르코수르, 터키, 한국, 칠레를 지목
- 따라서 한국이 수세적인 입장에 놓일 것으로 예상

EU측 요구사항

□ 앞으로 EU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

- EU는 EU산업의 지적재산권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입장
- EU집행위는 물론 EUCCK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거론

34)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IIPA), Annual Special 301 Report, 2007.4

□ EU는 이미 1차 협상에서 명품을 모방한 모조품의 단속을 강력히 요구

-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관심분야와 EU측 관심분야는 차이
 - 미국은 S/W와 영상매체(DVDs)의 불법 복제를 문제시 삼는 반면, EU는 ‘루이뷔통’, ‘구찌’, ‘까르티에’ 등 명품 모조품의 불법 수입 및 시중 유통에 대해 문제 제시
 - 유럽산 명품을 모방한 모조품의 국내 불법 반입량이 950억원 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나 증가
- 앞으로 EU는 명품의 모조품 및 불법 DVDs 복제상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전망
 - 중국산 모조품 중 일부는 한국인 또는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
 - 적발 실적에 대한 정보, 모조품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요구할 가능성

□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GIs)³⁵⁾의 보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

- EU는 이미 1차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 GIs)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
 - 와인, 증류주는 물론 농산물과 식료품이 주요 대상
- 2차 협상부터 지리적 표시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요구를 해 올 것으로 예상

⑤ 서비스시장

□ EU의 서비스시장은 거의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한국이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분야는 많지 않을 전망

35)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지역 이름을 표시해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명칭을 배타적 권리로 인정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임. EU에는 2003년 기준으로 4,800여개의 지리적 표시(와인 등 주류 4,200개, 기타 품목 600개)가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음

- 서비스산업은 EU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
 - EU의 서비스산업은 EU전체 GDP 및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세계 서비스교역에서 수출 27.8%, 수입 25.1%를 점유

- EU가 아직 개방하지 않고 있는 분야는 공공, 의료, 교육, 시청각 서비스 등 민감한 분야들
 - 이들 분야는 한국기업이 당분간 진출할 의사나 가능성이 희박

《 DDA 협상에서 EU의 서비스시장 개방안 》

- ◇외국민 일시 이동 확대
 - EU내 소비자에게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나 개인의 입국조건 완화 및 체류기간 연장
- ◇교통
 - 해운업 일부 개방(빈 컨테이너 운반 등) 및 항공기 지상 조업, 공항 운영업 추가 개방 등
- ◇금융
 - 금융 서비스에 부여된 각국별 제한사항 일부 완화
- ◇통신
 - 외국 통신업자의 국내시장 전면 개방, 각국별 제한사항 일부 완화
 - 그리스의 통신업자의 비통신사업 금지규정 폐지, 포르투갈의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규정 철폐 등
- ◇우편
 - 특송업, 소포배달업 추가 개방 등
- ◇전문직
 - 법률서비스 전면 개방, 회계업, 건축업 개방 등
- ◇환경
 - 오수처리업, 소음방지업 개방폭 확대 등
- ◇유통
 - 백화점 개설 시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 등
- ◇관광
 - 여행사에 대한 일부 국가의 국적조항 철폐 등
- ◇언론 및 오락
 - 일부 국가의 시장개방 부대조건(소유지분 제한, 체류의무, EU국적 소지 의무 등) 폐지

자료 : 외교통상부

서비스시장 개방 방식을 놓고 한국과 EU는 견해차를 노출

- 1차 협상에서 한국은 한-미 FTA에서처럼 네거티브(비개방 분야 열거)방식을, EU는 WTO 다자간 협상에서처럼 포지티브(개방분야 열거) 방식을 주장

한국측 요구사항

- 한국이 서비스협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既개방된 서비스시장 중 최혜국(MFN)대우 예외로 인해 접근이 제한된 분야
 - EU는 다수의 분야에서 최혜국대우 부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제한 정도와 대상 분야는 각 회원국별로 상이
 - 한국이 EU에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분야는 전문직 서비스 중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분야, 한방의료, 인쇄 및 출판, 통신, 건설, 금융, 관광, 운송 등

EU측 요구사항

- EU는 그동안 양자간 협정에서 상호주의를 내세워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음
 - 칠레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에서 서비스시장 개방에 합의
 - 러시아 및 기타 CIS국가들과의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 멕시코 및 칠레와의 FTA협정 등에서도 서비스무역을 포함
 - 현재 EU는 지중해 연안국, 메르코수르, GCC 등과의 FTA협상에서도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 중
- 앞으로 EU는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
 - 서비스협상에서 법률, 통신, 금융, 운송(우편택배) 서비스 분야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수준 이상의 시장개방을 요구

- 다만, 방송서비스 시장은 요구 대상에서 제외
- EU는 GATT/WTO의 서비스무역 유형(mode)³⁶⁾ 중 모드 3(상업적 주재)에 가장 큰 관심
 - 모드3의 서비스무역을 가로막는 장애물
 - 외국인 지분 제한, 합작(J/V) 의무화
 - 설립 형태 및 제공 서비스의 규모와 유형의 제한
 - 차별적인 등록 요건과 승인 절차
 - 국적 및 거주 요건
 - 경제적 필요성 심사 및 국내기업에 유리한 차별 대우

법률서비스 분야의 EU측 요구사항

- EU는 한-미 FTA 협상 수준에서 법률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임
 - 현재 한국은 외국 법률회사의 국내 영업과 외국 변호사가 외국법에 관해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을 금지
 - 외국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독립적인 업무처리는 불가능
 - 한-미 FTA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

< 한-미 FTA의 법률서비스시장 합의 내용 >

- ◇발효 즉시 : 외국법 자문 허용, 외국 법률회사의 사무소 개설 허용
- ◇발효 후 2년 : 국내 법률회사와의 제휴 허용
- ◇발효 후 5년 : 합작 및 국내 변호사의 고용 허용

36) 모드1은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 모드2는 해외에서의 소비(consumption abroad), 모드3는 해외지사 설립을 통한 영업(commercial presence)으로 현지국에 소재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이 현지국 거주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모드4는 해외 취업(presence of natural persons)으로 해외에서 일시 고용(non-permanent employment)된 사람과 현지국 서비스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공급하는 서비스

- EU는 외국 법률회사 및 외국인 변호사의 자국법, 국제법 자문은 물론 국내 변호사 고용 및 동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앞으로 법률서비스 강국인 영국의 강한 요구가 예상
 - 영국은 외국 법률회사와 한국 법률회사의 업무 제휴 및 외국 법률회사의 한국인 변호사 채용을 동시에 요구
 - 단계적인 개방이 아닌 동시 개방을 통해 개방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려는 의도

통신서비스 분야의 예상 쟁점³⁷⁾

- 2차 협상에서 EU가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아직은 미지수
 - EUCCK의 『2006년 무역장벽백서』에서는 한국의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EU가 기체결한 FTA 중 통신서비스의 협정문이 있는 경우는 EU-칠레 FTA가 유일
 - EU-칠레 FTA 협정도 WTO 양허안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타결
- EU의 통신서비스 분야의 양허안 내용
 - 기본통신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따로 기재하지 않고 모두 양허
 - EU는 통신서비스 정의에 “All services..”로 하고 있어 기본 및 부가서비스 모두를 양허하였다는 입장 (2005년 6월 27일 한-EU 양자협상)

37) 강하연, 'EU 기체결 FTA의 통신 관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EU FTA 통신서비스부문 공청회 자료, 2007.4

통신서비스 분야의 EU의 모드별 제한 사항

분류	제한사항
모드1	사이프러스 및 몰타 외에 제한 없음
모드2	제한 없음
모드3	핀란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및 폴란드는 제한, 나머지 국가는 제한 없음 - 핀란드: 자국 거주 요건, 이사진 자국민 구성 요건, 법인 자국 주재 요건 - 프랑스: 비EC회원인 및 법인 의결권주 20%제한, 투자자 EU회원 국적 보유 의무 - 폴란드: 외국인 투자제한 49% - 슬로베니아: 외국인 투자한도 99%
모드4	- 기업내 전근자 및 기업인 방문자는 사이프러스 외 회원국에서 수평적 양허 사항 외 미양허 - 계약서비스 공급자와 독립적 전문가는 모든 회원국이 미양허

□ 한국과 EU의 양허 비교

	EU	한국
모드1	제한 없음	상업적 약정 체결요건 기재
모드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모드3	핀란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및 폴란드는 제한, 나머지 국가는 제한 없음 - 핀란드: 자국 거주 요건, 이사진 자국민 구성 요건, 법인 자국 주재 요건 - 프랑스: 비EC회원인 및 법인 의결권주 20% 제한, 투자자 EU회원국적 보유 의무 - 폴란드: 외국인 투자제한 49% - 슬로베니아: 외국인 투자한도 99%	직접 49% 간접 80% 외국인 의제(국내 법인에 15% 또는 최대주주인 외국인) 제도 KT 대주주 허용 불허
모드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 EU가 체결한 FTA중 통신부문 양허는 EU-칠레 FTA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DDA 양허안과 유사한 포지티브 양허 방식을 채택
- 기본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를 동일 항목에 모두 기재
- EU의 DDA 수정 양허안과 달리 w/120 분류 방식(14개 서비스로 구분)을 사용하여 기본 및 부가서비스를 모두 열거

- 특별한 모드별 제한은 없음
 - 비고란에 사업허가요건에서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건 기재

<한-미 FTA의 통신서비스 분야 타결 내용>

- ◇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지분 한도를 49%로 유지
 - 당초 미국은 51%로 확대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
 -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20%로 계속 제한
- ◇ 대신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비율을 100%까지 확대
 - 다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 SK텔레콤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한 지분소유를 49%까지만 허용
 - 향후 2년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
- ◇ 정보기술 주권 인정
 - 미국은 정부 주도의 기술표준 설정 권한을 개별 사업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
 -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권한을 인정하되, 표준 제정시 외국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주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합의
-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기간통신망 개방
 - 국내기업과 외국 기업간 차별 철폐
-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협력 강화
 - 전자 서명 및 인증제도를 상호 인정
 - 거래시 전자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협의, 선택하도록 규정
-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의 경우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며,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도 관세를 철폐
 - CD, DVD 또는 마그네틱테이프에 수록되는 음악, 동영상 등 영상기록매체의 경우 현재 오프라인 상품거래에 대해 8% 또는 분당 20원의 관세가 부과
 -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의 무관세화에 따른 미국산 디지털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 예상
- ◇ 저작권 강화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의 개정 필요

EU측 요구사항

- 한-EU FTA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한국의 통신서비스시장 개방

- EU는 우리나라의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의 완화 또는 폐지 문제를 제기할 전망
 - 한국은 DDA 양허안으로 외국인의 간접투자비율을 80%로 제한했으나 한-미 FTA에서는 100%까지 허용
- 또한 EU는 국경간 서비스거래(모드1)의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
 - 통신서비스 규제의 구체적인 명문화도 요구

금융서비스 분야의 EU측 요구사항

- 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충분히 개방된 상태이므로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주한 EU상공회의소는 은행(현지통화 표시 채권 발행), 보험(과생금융상품 판매 허용,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등), 투자 및 증권(인허가 간소화, 선물 및 옵션거래의 상호거래 허용, 자산 운용사 업무 확대 등)에서 제도개선을 요구
 - 하지만 금융서비스 협상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될 전망
- 앞으로 퇴직연금시장의 개방 문제가 금융분야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
 - EU가 금융분야 협상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분야는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퇴직연금과 석유화학업체들을 상대로 하는 화재보험
 -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
 - 2007년 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23만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고 적립금액도 약 8,200억원 수준
 - 하지만 오는 2010년까지는 기존의 퇴직보험(보험사)과 퇴직신탁(은행, 증권사)도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함

- 보험개발원은 2010년 퇴직금이 100%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연금 규모가 67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들 시장에 대한 국경간 거래 허용이 EU측의 핵심 요구사항이 될 것으로 보임
- ‘보험강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한국의 퇴직연금시장에 대해 현지법인이나 지점 없이 이뤄지는 ‘국경간 거래’의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
- 영국과 프랑스의 보험사들은 개인을 상대로 한 생명보험보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퇴직연금과 화재보험 등에 관심이 많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요구는 미국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협상에서는 선박보험, 항공·우주보험, 수출입적하보험, 재보험에 대해서만 국경간 거래를 허용기로 합의
- 이 경우에도 인터넷, 전화 등 非對面 방식으로만 판매가 허용

⑥ 투자 및 경쟁정책

- 앞으로 투자분야 협상은 한국과 개별 회원국 간에 체결되었던 기존의 투자협정을 보완하는 선에서 논의될 전망
- 투자분야 협상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규제되고 있는 투자정책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성격³⁸⁾
- EU는 유럽 투자자들이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 투자장벽 철폐를 요구
 - 상호주의를 내세워 은행, 보험,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를 요구
- 1차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 EU는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자의 소송문제는 회원국 차원에서 양자간

38) EU는 EU-칠레 FTA에서 처음으로 투자분야 협정을 포함

투자협정을 통해 규율하는 사항이므로 EU차원의 FTA협상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

- 한-미 FTA에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의 도입문제로 막판 진통

□ EU는 앞으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규제와 관행을 문제 삼을 가능성

- 최근 주한EU상공회의소(EUCCK)는 산하에 부동산위원회를 설립
 - 유럽 부동산 투자자들의 한국투자 및 방문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 부동산시장의 관행과 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
 - 부동산 분야의 법률 관련 서비스 제공 및 공동 이슈 발굴 등을 통해 이익단체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
- 앞으로 부동산위원회가 FTA 협상에서 정보제공 및 시장개방 압력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
 - 회원사의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장관행, 매매절차와 구조, 부동산개발, 규제 및 인가 관련 문제 등 부동산관련 이슈를 제기

□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경쟁 챕터(Chapter)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관세철폐 등을 통해 상품·서비스 등의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경쟁 제한적인 행위가 만연할 경우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半減되기 때문

□ 한국과 EU는 투명하고 투자자에게 유리한 분쟁해결절차의 도입 등을 다루는 경쟁 챕터의 채택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

- 1차 협상에서 포괄적 범위 내에서 카르텔의 시장지배 남용, 경쟁 제한적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하기로 합의
- 앞으로 정부지정 독점기업 및 공기업의 정의, 범위, 의무 등의 명문화를 요구할 전망

- 정부위임 권한 행사시 FTA 당사국 의무 준수
 - 상업적 고려에 따라 판매, 구입 등 영업활동을 수행
 - 상대국 투자 및 상품·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차별적 대우
 -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 경쟁협력 협정의 체결
 - 양 경쟁당국 간 정보교환 및 협의를 강화

⑦ 정부조달시장

□ 한국과 EU의 27개 회원국은 모두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체결국

- 한국은 1994년에 WTO의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³⁹⁾에 서명했으며, 1997년부터 적용을 받기 시작
- 기존의 EU 15개국은 물론 12개 신규 회원국들도 EU가입과 동시에 GPA의 적용
- 따라서 한국과 EU 모두 중앙정부의 양허 하한선이 동일
 - 하지만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경우에는 EU의 양허 하한선이 더 낮아 개방 폭이 한국보다 더 큼

주요 가입국의 양허 하한선 수준

(1,000 SDR)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한국	130	130	5,000	200	200	15,000	450	-	15,000
EU	130	130	5,000	200	200	5,000	400	400	5,000
미국	130	130	5,000	355	355	5,000	400	400	5,000

자료 : WTO

39)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조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정부조달 분야의 국제경쟁 강화와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WTO 무역협정

한국측 요구사항

- 앞으로 한국은 EU의 정부조달시장 입찰과 관련하여 제3국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
 - 새로운 공공조달지침(Public Procurement Directive)⁴⁰⁾은 낙찰자 선정기준(award criteria)에 사회 환경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
 - 원칙적으로 최저가 또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낙찰자 선정 시 고용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등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함
 - 다수의 응찰자들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EU역내 업체, 특히 발주국 업체가 최종 선정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임
 - 이는 제3국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 현재 회원국들은 CE마크⁴¹⁾ 이외에 자국 표준을 추가로 요구함으로써 비용이 과다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
 - 독일의 DIN 표준 획득과 TUV 인증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 발생
 - EU의 정부조달규정의 무차별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지기업을 선호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행(grey area)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개선을 요구

EU측 요구사항

- 앞으로 EU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양허안을 요구할 전망
 - 한-미 FTA에서 양국은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하기로 합의
 - 양허 하한선(threshold value)을 20만 달러(13만 SDR⁴²⁾) 수준에서 10만 달러(6만 5,000 SDR) 수준으로 대폭 인하
 - 이는 외국 기업이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조달사업의 하

40) 이 지침은 2004년 2월 3일 최종 채택되었음

41) CE마크는 상품이 EU지침의 모든 관련 있는 필요조건을 준수한다는 제조자의 품질보증서

42)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으로 IMF에서 사용하는 통화단위

한선(최소금액)이 낮아짐으로써 외국기업으로서는 한국의 정부조달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것을 의미

- 주한 EU상공회의소의 무역장벽백서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나, 앞으로 EU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양허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⑧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한국이 EU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분야

- EU의 원산지 규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별 회원국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는 문제

한국측 요구사항

□ 앞으로 한국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EU의 원산지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함

- EU는 제품별로 세 가지 원산지 판정 기준을 혼용
 - 稅番 변경(Change of Tariff Headings; CTH) 기준
 - 최소부가가치(Minimum Valued Added; VA) 기준 : 역내 부가가치 40~75% 이상이면 역내산으로 인정⁴³⁾
 - 특정가공공정(Specific Process) 기준
- 최소부가가치기준 사용 시 공장도(ex-work)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운임 및 보험료가 제외되어 외국기업에게 불리
-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EU는 특정가공공정(SP) 기준을 적용
 - 미국은 보다 까다로운 얀 포워드(Yarn Forward) 방식⁴⁴⁾을 고수

43)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EU는 원산지 부가가치를 60% 이상 요구

44) 얀 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FTA 체결국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Yarn)를 사용해 최종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규정

- EU는 대부분의 경우 10%의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⁴⁵⁾을 적용
 - EU-남아공 FTA에서는 15% 허용(섬유·의류 및 일부 수산물과 농산물은 제외)
- EU는 대부분의 FTA에서 양자간 누적(Bilateral cumulation)기준을 적용하고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기준⁴⁶⁾은 유럽국가(PANEURO)와 남아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EU에게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⁴⁷⁾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

-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합작사업에 의한 제품을 한국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한국 원산지의 누적조항이 필수적
-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은 물론 한-미 FTA⁴⁸⁾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은 바 있음
- 역외가공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되, 인정품목도 가급적 확대해 줄 것을 요구
 - EU는 역외가공을 가급적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

□ 관세 환급(Drawback)의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도 요청

-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의 환급제도는 WTO 보조금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보편적인 수출지원제도
- 한국은 관세 환급을 허용하는 반면, EU는 기본적으로 관세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

45)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원산지 성분의 허용 비율

46)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이란 당해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함

47) 한 국가에서 반제품을 생산(1단계)하여 이를 역외에 수출하여 조립(2단계)하고, 이들 다시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3단계)했을 때, 1단계의 부가가치와 3단계의 부가가치를 합하여 역내 부가가치로 인정해주는 규정

48) 한-미 FTA에서는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과 관행 등을 명시

- 관세 환급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관세 환급 금지조항을 삽입하지 않도록 요청
- 관세 환급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경우 가급적 최장기간 확보

주요 특혜무역협정(PTA)의 원산지 규정 적용 현황

특혜무역협정	최소허용기준 (%)	흡수기준	누적기준		관세 환급
			양자간 누적	유사 누적	
PANEURO	10	Yes	Yes	Yes(EEA)	불허
EU-남아공	15	Yes	Yes	Yes(ACP)	언급 없음
EU-멕시코	10	Yes	Yes	No	2년후 불허
EU-칠레	10	Yes	yes	No	4년후 불허
NAFTA	7	Yes	Yes	No	7년후 불허
한-칠레	8	Yes	Yes	No	언급 없음

주: 흡수기준(Roll-up)이란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또 최종 제품에 사용되면 해당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방식

자료: UNCTAD,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 The New Interface', 2005

⑨ 무역구제조치

□ EU는 무역구제조치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국가

- EU의 무역구제조치(Trade Defence Instruments; TDI)에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 있음
- WTO는 불공정한 경쟁(반덤핑관세, 상계관세)과 국내산업의 일시적인 보호(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해서만 무역구제조치를 사용하도록 규정
- 반덤핑 규제의 세계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EU의 반덤핑 규제는 다시 증가
- 1995~2005년에 EU는 인도(425건), 미국(366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반덤핑조사(327건)를 개시
- 2006년에 EU는 35건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여 최대의 반덤핑관세 부과 국가가 됨
- 이는 1994년 WTO 출범 이래 3번째로 많은 규모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세계	157	225	243	257	354	292	364	312	232	213	191	172
인도	6	21	13	28	64	41	79	81	46	21	25	36
EU	33	25	41	22	65	32	28	20	7	30	24	35

자료 : Cliff Stevenson(2007),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2007

□ EU는 현재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총 6건의 수입규제를 부과 중

- 반덤핑관세 5건과 1건의 상계관세가 적용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국 가		반덤핑	반덤핑/ 상계조치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총계
북미	캐나다	3	0	0	0	3
	미국	13(1)	5(1)	1	0	19(2)
중남미	아르헨티나	3	0	0	0	3
	멕시코	2	0	0	0	2
아시아	중국	22(3)	0	0	0	22(3)
	인도	20(5)	0	0	1	21(5)
	인도네시아	2	0	0	1	3
	일본	1	0	1	0	2
	말레이시아	4(1)	0	0	0	4(1)
	파키스탄	3(1)	0	0	0	3(1)
	대만	1	0	0	0	1
	태국	2	0	0	0	2
아프리카	이집트	2(1)	0	0	0	2(1)
	남아공	4	0	0	0	4
유럽	EU	5	0	1	0	6
	러시아	0	0	0	1	1
대양주	호주	9	0	0	0	9
	뉴질랜드	1	0	0	0	1
중동	터키	6	0	0	0	6
총계 (19개국)		103(12)	5(1)	3	3	114(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현황

- 전기전자가 EU의 주요 수입규제 대상

- 전기전자제품 3건(양문형 냉장고, DRAM, 컬러TV), 철강/금속 1건(철강재 管연결구류), 섬유류 1건(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 기타 1건(PET 칩)

EU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2007.4 현재)

HS코드	품목명	규제 내용	조사 개시일
8540.11	컬러TV용 브라운관	반덤핑관세 (규제 종료)	2006.1.11
8418.1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관세 (규제 중)	2005.6.2
8542.21.2010	DRAM	상계관세 (규제 중)	2002.7.25
7307.93, 7307.99	철강재 管연결구류	반덤핑관세 (규제 중)	2001.6.1
3920.62.00.00	PET Film	반덤핑관세 (규제종료)	2000.5.27
3907.6	PET CHIP(페트병, 페트필름, 폴리에스테르 제조원료)	반덤핑관세 (규제 중)	1999.11.6
5503.20.1000, 9000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쿠션, 자동차 시트, 자켓 등의 섬유제품 기초재료)	반덤핑관세 (규제 중)	1999.10.7
8528-12-9010,9020,9030,9040,9050, 9060	컬러 TV(17 " 이하 및 18 " 이상)	반덤핑관세 (규제 중)	1988.2.1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현황

한국측 요구사항

주요 수출국으로서 EU의 무역구제조치의 개선을 요구할 필요

- EU의 반덤핑 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
- 반덤핑 조사의 개시나 제소 이전에 당사국끼리 서면 통보 및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제도화
 - 무역구제기관 간의 협력 강화
-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낮은 관세적용의 원칙’⁴⁹⁾이나 제로잉

49)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해도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원칙

(Zeroing)⁵⁰⁾ 금지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

《 EU의 반덤핑규정 및 운영상 문제점 》

- ◇잠정관세 및 확정관세 부과 검토시 고려해야 하는 소비자 이익 등 공동체 이익 (community interest)의 기준이 모호하고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
- ◇비대칭적 가격 비교(Asymmetric comparison)
 - 국내가격 산정 시 수출업체의 내수판매와 관련된 비용과 이윤을 불인정
- ◇무시할만한 수입량 적용의 불합리성
 - WTO는 무시할만한 수입량을 동종 물품 수입량의 3%(국가간 합계 7%)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EU는 시장점유율 2%(국가간 합계 3%) 이하로 규정
- ◇재심기간의 장기화 문제
- ◇제조자료의 접근성 문제
 - 미국은 제조 즉시 제조자료의 열람이 가능하지만 EU는 조사개시 사실을 EU관보에 게재한 이후에야 열람을 허용
- ◇우회덤핑방지관세(anti-circumvention) 제도의 문제점
 - WTO는 조사당국의 개별적인 덤핑 및 피해 판정 없이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금지하지만 EU의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별도의 덤핑 산정 없이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⑩ 노동기준(labour standard)

- WTO 회원국은 1998년에 채택된 ILO의 ‘노동의 기본권과 원칙에 대한 선언’을 준수하도록 규정

50) 제로잉(zeroing)은 반덤핑 관세를 산정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으로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높은 경우(負의 마진)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제로잉)으로 계산하여 덤핑관세율을 높이려는 조치. EU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로잉 조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2007년 5월 11일에 미국의 제로잉 조치를 WTO에 제소할 바 있음.

- ILO의 네 가지 핵심 노동기준
 - 집단 교섭권의 보장
 - 강제노동 금지
 - 아동노동 금지
 - 성별과 인종 등에 의한 차별대우 철폐

- 하지만 ILO의 협약과 선언은 강제성을 갖지 못함

- 협약을 인정한 국가가 그 규정을 어길 경우 국제법 위반에 따라 국제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할 수 있음
 - 노동기준과 관련된 국가 간 무역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해결력은 없음

- 국제무역에서 노동기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준은 GATT 20조
 - 공공 윤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대국에 대해 무역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은 수출 기업이 사회보장비용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

- EU는 남아공 및 멕시코와의 FTA 협정에서 노동기준을 포함시키지 않음
 - EU 내부적으로는 노동기준이 존재하지만, 남아공 및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

 - 미국과의 NAFTA 협상에서 노동기준에 대한 합의(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NAALC)를 거친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EU는 노동기준에 대해 특별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음

- EU-칠레 FTA에서는 노동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남아공이나 멕시코와는 달리 EU-칠레 FTA 협정에서 처음으로 노동기준의 준수를 명시
- ILO 협정의 노동기준을 반영(5장 44조)
 - 고용 창출 및 기본 인권을 최우선시
 - ILO협정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차별대우 금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철폐, 성차별 금지를 명시
- 하지만 EU-칠레 FTA는 ILO 협정에 언급된 핵심 노동기준 이외의 노동기준을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 ILO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 노동기준을 협정 당사자들이 인정할 것만을 규정
 - 또한 일반적인 사회개발 이슈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둔 조치를 중시할 것을 명시

□ 노동기준에 대한 EU의 접근전략은 미국의 전략과 상이

- 미국은 국제무역과 관련한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규정한 ‘국제노동기준’을 관철
- 반면 EU는 미국과 달리 FTA에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것에 미온적

□ FTA 협상권한을 갖고 있는 EU집행위는 미국 의회와는 달리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

- 의사결정 과정에의 접근 측면에서 보면 EU의 무역정책 형성메커니즘은 미국보다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FTA 협상은 각료이사회가 EU집행위에 협상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추진되며, EU집행위는 주요 협상 결과를 각료이사회에 보고하고 각료이사회가 최종적으로 비준
 - 따라서 협상에 나서는 EU집행위는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있어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음

- 한-EU FTA 협상에서 EU는 미국 수준 이상의 노동기준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노동기준은 MFN 원칙과 ‘톱니바퀴메커니즘(ratchet mechanisms)’⁵¹⁾에 따라 한-미 FTA 협상 결과가 EU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EU로서는 노동기준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음
 - 미국과 체결한 FTA의 노동기준은 다른 WTO 회원국들에게도 비차별적으로 적용
 - 일부 회원국들이 내부 협의 과정에서 노동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EU집행위의 新통상정책이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요구가 채택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전통적으로 국제무역 협정과 개도국의 노동기준 강화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
 -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미국 의회가 노동기준의 강화를 요구해 옴에 따라 향후 재협상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

⑪ 환경규제

한국측 요구사항

- 무역규제 효과를 수반하는 EU의 환경정책의 개선을 요구할 필요
 - EU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은 외국기업에게 무역규제 효과를 지닌 기술장벽으로 작용
 - 무역규제 관련 환경정책은 화학물질 규제(REACH⁵²⁾ 등)와 제품규제(WEEE⁵³⁾, RoHS⁵⁴⁾, ELV⁵⁵⁾지침 등)로 대별

51) 톱니바퀴메커니즘은 한번 도입한 법규는 폐지하거나 유예 혹은 예외로 회귀할 수 없는 원칙

52)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머리글자

53)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약자

54)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특히 EU의 REACH제도는 환경보호를 내세운 강력한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할 필요
 - EU는 환경보호와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
 - 2006년 12월에 채택하여 2007년 6월 발효
 - 기존의 환경규제(RoHS, WEEE 등)가 제한된 제품·물질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한데 반해, REACH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함유된 화학물질)을 대상
 - 따라서 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섬유 등 모든 산업에 영향
 - 앞으로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 기존 화학물질(1톤/년 이상)과 완제품(자동차, 전자 등)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등록해야 함
 - 사전등록기간은 2008.6~11(6개월), 본 등록은 2008~2018년까지 단계적 실시
 - 기한 내 사전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EU로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에 악영향
 - 일본의 등록비용은 약 7.8조원으로 추정된 바, 일본 화학산업의 1/3 수준인 우리나라는 약 2.5조원으로 추정
 - 우리와 화학산업 규모가 유사한 영국은 약 9,300억원으로 추정
- 이외에도 EU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의 개선을 요구할 필요
 -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

55) 'End of Life Vehicle'

- 폐전기전자제품(WEEE)을 2006년말까지 1인당 일정수량 이상을 회수할 것을 의무화
- 2006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가 포함된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 금지
- 자동차 및 非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엄격한 적용 기준을 적용 → EuroIII(2000년 적용), EuroIV(2005년 적용), EuroV(2009년 적용 예정)
 - 승용차 CO₂ 배출량을 2012년까지 120g/km로 감축 추진
- 자동차 폐차(End of Life Vehicle; ELV) 지침
 - 폐차 중량기준 95%까지 수거, 재활용 또는 폐기의무를 생산업체에 부과
- 건전지 함유물질(수은 및 카드뮴) 규제강화 및 회수처리비용 증가
-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PPW) 지침
- 에코라벨(Eco-label) 제도
 -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차원에서 에코라벨을 부여
 - 현재 24개 제품군에 대한 에코라벨을 지정하였고 30개 제품군에 대해 제정 가능성

⑫ 농업

- 한-미 협상에 비해 한-EU 협상에서는 농업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국과 EU 양측 모두가 농업개방 문제를 매우 민감한 이슈로 인식
 - EU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통해 농업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한국은 쌀 등 비양허 품목과 다수의 수량규제 품목을 보유

- EU는 전통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특히 식량안보)을 중시하여 기본 농산물을 민감 품목으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한-EU 협상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전망
- EU는 농산물을 기본농산물(Basic products)과 가공농산물(Processed products)로 구분하여 시장개방 문제에 차별적으로 접근

한국측 요구사항

- 한국은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EU의 수량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함
- EU는 한국산 89개 농산물에 대해 수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 품목은 전액 소진
- 양고기, 닭고기, 버터, 치즈, 사과, 배, 감자, 당근 등
- 따라서 쿼터 소진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 확대를 요구
- 농산물의 위생 및 검역조치와 관련한 이슈도 제기할 필요
- 1차 협상에서 한국은 현재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인삼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해 줄 것을 EU측에 요구

EU측 요구사항

- EU는 앞으로 경쟁력을 지닌 가공농산물에 대해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EU는 돈육(돼지고기), 가금류 등 축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낙농품, 주류(위스키와 와인), 맥주, 올리브유, 가공식품 등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對韓 수출에 관심
- 치즈, 돈육, 와인 및 위스키 등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 인하 압력이 예상

- 농림축산물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49.8%로, 현재 치즈(36%)와 돼지고기(25%) 등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
 - 농산물 수출국인 동유럽 회원국들의 새로운 개방 압력도 예상
- EU는 농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임
- EU는 1차 협상에서 EU의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 중 하나인 돈육의 한국 내 수입 검역조건의 개선을 강력 요구
 -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관련하여 앞으로 주요 쟁점으로 부각 전망
 -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 보호 문제가 2차 협상부터 집중 논의될 전망
 - 지리적 표시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부 유럽지역의 농업국가들이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가장 중시하는 분야

Ⅲ. 향후 전망과 경제적 기대효과

1. 향후 전망

완전 타결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

□ 양측은 2008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착수

- 양측은 연내에 네 차례 정도⁵⁶⁾의 공식 협상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1~2차례의 중간협상도 진행할 예정
- 외교통상부의 김한수 국장과 EU집행위의 가르시아 베르세로(Garcia Bercero) 통상총국(DG) 동아시아 국장이 양측 협상대표
- 1차 협상에서는 협상의 큰 틀을 잡고 기본원칙을 세우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음
- 6월말 모든 협정문 초안과 각 분야의 개방안이 교환되면 7월 16~20일에 열리는 2차 협상부터 분야별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

□ 연내 타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음

- 한-미 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몇몇 분야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여론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
- FTA 반대자들도 EU와의 FTA에 대해서는 아직 저항이 덜한 편⁵⁷⁾
- 특히 민감 분야인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한국과 EU는 비슷한 입장이므로 농업 문제는 그다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

56) 2, 3차 협상은 7월 16~20일과 9월 17~21일에 브뤼셀에서, 4차 협상은 11월 중에(추후 확정)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57) 최근 '한-EU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음

- 한-미 FTA의 비준 및 발효시점에 맞추기 위해 EU가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하지만 EU가 새로운 차원의 포괄적인 FTA 협정을 원하고 있어 의외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의 합의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시장개방안을 EU에게 제시
 -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투자 및 서비스분야에서 최혜국대우 원칙을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많은 양보를 EU에게 할 경우 미국의 추가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EU가 한-미 FTA 이상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한국의 기대수준 이하로 EU가 시장개방에 소극적일 경우 협상은 난항 예상

- 농산물 수출국인 동유럽 국가들이 농업시장과 관련하여 예상외로 무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경우 협상은 장기화되고 표류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능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경영자연합회(UNICE)는 최종 협상시한의 설정을 주문

- 협상 타결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

- 한-미 FTA 협정문의 비준과 발효 시점이 한-EU 협상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
 - 한-미 양국에서 비준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2008년 초에 발효될 경우 EU로서는 신속한 협상이 중요

- 따라서 늦어도 2008년 상반기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

□ EU의 내부조율 여부가 조기 타결의 변수로도 작용할 가능성

- EU가 27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EU 내부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
 - 회원국 간 소득수준 및 산업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서비스시장 개방은 물론 관세양허 품목, 양허 폭과 시기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상충
- 이 때문에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한-EU 간에 그리고 EU회원국들 간에 빅딜(Big Deal)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이 과정에서 EU의 무역정책을 조율하는 133조 위원회(133 committee)⁵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하면, FTA 등 대외 통상정책을 채택하려면 가중다수결투표(Qualified Majority Voting; QMV)⁵⁹⁾를 통한 각료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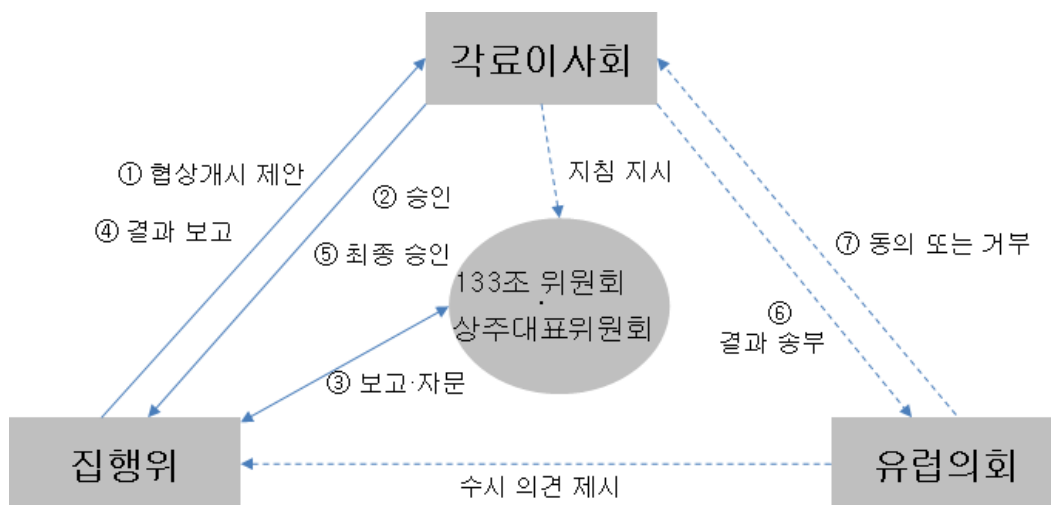
《 EU의 대외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

- ◇EU집행위가 협상을 각료이사회에 제안
- ◇각료이사회는 의사결정자로서 협상 권한(mandate)을 집행위에 부여
- ◇집행위는 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회원국을 대표한 협상의 주체로서 협상에 착수하고, 각료이사회가 협상 결과를 승인
 - 규정은 가중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
- ◇유럽의회는 각료이사회에서 송부한 협상 결과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 협상 결과에 대한 수정은 불가

58) 133조 위원회(舊 113조 위원회)는 EU 공동통상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EU집행위와 각료이사회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함. 27개 회원국의 대표와 EU집행위 대표로 구성됨

59) 각료이사회의 정책 결정 시 각국의 인구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차등 부여하는 제도로, 독일/영국/프랑스/ 이탈리아는 각각 29표, 스페인/포르투갈은 각각 27표, 루마니아 14표, 네덜란드 13표, 벨기에/포르투갈/그리스/헝가리/체코는 각각 12표, 스웨덴/오스트리아/불가리아는 각각 10표, 핀란드/덴마크/아일랜드/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는 각각 7표, 룩셈부르크/사이프러스/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라트비아는 각각 4표, 몰타 3표가 주어짐. 채택에는 255표 이상과 전체 인구의 62% 이상을 대표하는 국가가 찬성해야 함.

EU의 공동통상정책 의사결정 메커니즘



2. 경제적 기대효과

한국경제는 GDP 2~3%, 수출물량 2.5~5% 증가

□ 한-EU FTA 체결 시 한국경제는 2~3%의 추가 성장이 예상

- 지금까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박순찬(2004), 김홍중(2005), 고종환(2006) 등이 있음
- 모두 CGE 분석모형⁶⁰⁾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
- 연구결과에 따라 한국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이 2~3% 증가하고, 수출 물량은 2.5~5.0% 증가하는 효과를 예상

□ 박순찬(2004)은 1.26~1.9%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예상

- 가장 낙관적인 가정을 전제
- 농업 및 제조업의 관세장벽 완전 철폐
- 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 50% 철폐

60)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Е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은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국내 경제부문들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이 상호의존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정책변화나 특정사건의 효과를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

- 분석 결과 한국경제는 한-EU FTA를 통해 단기적으로 1.26%, 장기적으로는 1.9% 추가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태적 분석(단기) : GDP 1.26% 증가(76억 달러, 2003년 기준)
 - 동태적 분석(장기) : GDP 1.9% 증가(115억 달러, 2003년 기준)
- 고용도 장기적으로 11만 8천명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
- 수출물량은 단기적으로 3.35%, 장기적으로 4.44% 증가
 - 한국의 對EU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여타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
- 하지만 이 연구에는 2004년 이후 신규 가입한 12개 국가가 빠져 있어 경제적 효과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 김홍중(2005)은 2.02~3.08%의 추가 경제성장을 예측

-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전제
 - 제조업의 관세와 무역장벽 완전철폐, 서비스 및 농업분야의 무역장벽 50% 감축
-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 2.02%(15.7조원, 2004년 기준) 증가, 장기적으로는 3.08%(24조원, 2004년 기준) 증가
- 고용은 단기적으로 1.34%, 장기적으로 2.4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출물량은 단기적으로 2.62%(64.7억 달러, 2005년 기준), 장기적으로 4.47%(110.4억 달러, 2005년 기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對EU 수출은 증가하지만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감소

□ 고종환(2006)은 2021년까지 2.3%의 추가 경제성장을 예측

- 구체화된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
 - 10년간(2008~2017년) 관세철폐 완료

- 농림어업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씩 10년간에 걸쳐 인하
 -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20%씩 5년간에 걸쳐 인하
 - 섬유제품 이외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10%씩 10년간에 걸쳐 감소
- 한국의 실질GDP는 2021년까지 2.3%가 더 증가하는 효과
- 수출물량은 2021년까지 5%가 더 증가

한-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박순찬(2004)	김홍중(2005)	고종환(2006)
GDP	정태적	+ 1.26%(76억불)	+ 2.02%	-
	동태적	+ 1.9%(115억불)	+ 3.08%	+ 2.3%
후생	정태적	-	+ 1.34%	-
	동태적	-	+ 2.45%	+ 140억불
수출물량	정태적	+ 3.35%	+ 2.62%(64.7억불)	-
	동태적	+ 4.44%	+ 4.47%(110.4억불)	+ 5%

자료 : 박순찬(2004), 김홍중(2005), 고종환(2006)

- 비관세장벽의 철폐 효과를 반영할 경우 한-EU FTA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
- 기존 연구결과들은 비관세장벽의 철폐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무역효과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

관세인하로 인한 산업별 영향은 상이

- 관세인하 시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공산품 분야에서 수출증대효과
- 최대 수혜품목은 자동차(40% 증가), 전기전자(13.5%), 섬유(9%), 운송기계(6%), 기타 기계류(6%) 등
- 반면 휴대폰, 반도체, PC 등 IT제품과 선박, 철강 등은 무관세 품목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전망

· 다만, 기계설비나 원자재 수입시 원가절감 효과 예상

관세인하가 對EU 수출품목에 미치는 영향

	수출액 (백만달러)	한-EU FTA 영향
자동차	9,163	10% 관세율로 수출증대효과(40% 증가)
무선통신기기	7,600	무관세 제품,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간접효과 기대
선박	7,437	무관세 제품,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수입원가 감소 효과
평판 디스플레이	3,132	관세율 0-2.2%, 직접 영향은 미미. 현지생산 경쟁력 기여
반도체	2,755	무관세, 직접 영향 없음. 수입원가 감소효과
컴퓨터 및 부품	2,108	무관세, 직접 영향 없음
영상기기	2,092	14% 관세부과 제품(컬러TV, VCR, 캠코더 등)은 수출증대효과
건설광산기계	1,105	무관세, 직접 영향 없음
자동차부품	983	4.5% 관세율(새시 19%), 수출증대효과. 현지생산 경쟁력 향상
철강관	868	무관세, 영향 없음
고무제품	763	4.5% 관세율, 수출증대 효과
석유제품	595	관세율 6.5%, 수출증대효과
합성수지	592	관세율 6.5%, 수출증대효과
냉장고	448	관세율 1.9%, 영향 미미
플라스틱 제품	386	관세율 6.5%, 수출증대효과
금속공작기계	368	관세율 2.7%, 영향 미미
가정용 회전기기	314	관세율 2.2%, 영향 미미
에어컨	300	관세율 2.7%, 영향 미미
정밀화학 원료	264	관세율 6.5%, 수출증대효과
유선통신기기	225	무관세, 영향 없음
원동기 및 펌프	216	관세율 2.7%, 영향 미미
공구	214	관세율 1.7%, 2.7%, 영향 미미
철강관 및 철강선	208	무관세, 영향 없음
의류	198	관세율 10.5%, 12%, 해외생산 유지시 관세인하 효과 미미
섬유 및 화학기계	192	관세율 1.7%, 영향 미미
편직물	187	관세율 8%, 수출증대효과
음향기기	158	무관세, 영향 없음
인조섬유	157	관세율 4%, 수출증대효과
인조섬유 장섬유사	151	관세율 8%, 수출증대효과
금형	149	관세율 2.7%, 영향 미미
전선	144	관세율 3.7%, 수출증대효과
건전지 및 축전지	131	관세율 3.7%, 4.7%, 수출증대효과
동제품	102	관세율 3%, 영향 미미

주 : 2006년 통계, MTI 3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KOTIS

EU의 對韓 수출은 48% 증가

- EU는 한국, 인도, ASEAN과 FTA 체결 시 상당한 수출증가효과를 예상
 - Copenhagen Economics와 CEPII(Centre d'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는 한국, 인도, ASEAN과의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
 - EU 전체 GDP는 0.13%, EU 수출은 3.72%(420억 유로) 증가 전망
 - EU의 총 수출은 3.72% 증가
 - 對한국 수출은 47.8%(191억 유로), 對ASEAN 수출은 24.4%, 對인도 수출은 56.8% 증가
 - 서비스(한국, ASEAN), 공산품(인도)이 유망분야
 - 對韓 서비스 수출은 22%(42억 유로) 증가
 - 對ASEAN 서비스 수출은 29% 증가
 - 對인도 공산품 수출은 50% 증가 (자동차 수출은 700% 증가)
 - 협정 체결국들의 對EU 수출도 증가
 - 한국의 對EU 수출은 36%⁶¹⁾(128억 유로), ASEAN의 對EU 수출은 18.5%, 인도의 對EU 수출은 18.7% 증가
 - 한국의 對EU 자동차 수출은 40%(52억 유로) 증가
 - ASEAN의 對EU 서비스수출은 80% 증가
 - 인도의 對EU 섬유 및 의류 수출은 46% 증가
- EU는 3개국과의 FTA가 세계무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입장
 - 3개국과의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⁶²⁾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61) 국내 연구결과(수출물량 2.5~5% 증가)와 Copenhagen Economics의 연구 결과(36% 증가)의 차이는 수출 증가분을 前者에서는 한국의 전체 수출로 나눈 반면, 後者는 한국의 對EU 수출로 나눈 결과에서 비롯됨. 실제 연구결과는 큰 차이가 없음.

62) FTA 체결 이후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현상

- 서비스분야처럼 현재 WTO 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다자간 협상체제를 보완
- 본 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DDA 타결로 예상되는 이득의 40%에 해당
- 서비스, 투자 등 WTO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가 중심
- 실제 EU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경우 추가 이득도 예상

FTA로 인한 EU의 경제적 효과

FTA 협상국	EU수출	EU수출의 증가 합계	EU수입	EU수입의 증가 합계
ASEAN	+ 24.2%	+ 1.98%	+ 18.5%	1.72%
인도	+ 56.8%	+ 0.72%	+ 18.7%	0.68%
한국	+ 47.8%	+ 0.53%	+ 36%	-
총계	-	+ 3.72%	-	+ 3.45%

- 주 : 1) ASEAN: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의 완전자유화 및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 50% 삭감 가정
 2) 인도: 모든 무역장벽의 95% 인하 및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 25% 삭감 가정
 3) 한국: 농산품을 제외한 모든 무역분야의 완전 자유화 및 농산품의 관세 40% 인하 및 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 25% 삭감 가정

자료 : European Commission's Memo(2007.4.23)에서 재인용

IV. 협상전략

비전 및 목표 : EU와 아시아 최고의 파트너십을 구축

□ FTA 체결을 통해 한-EU 경제관계를 업그레이드

- 포괄적인 한-EU FTA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한-EU 경제관계를 심화·확대시켜 ‘아시아 최고의 파트너십(Best Partnership)’을 구축
- 한국은 EU를 한-미 경제관계의 균형자 내지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고, EU는 한국을 동북아의 관문(Gateway)으로 활용

□ 무역측면에서는 수출시장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 EU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EU시장에서 2%대의 점유율 한계를 돌파
 - FTA 체결시 對EU 수출은 128억 유로 증가(Copenhagen Economics 추정 기준)⁶³⁾하여 EU내 시장점유율이 3.9%로 상승 전망
- 국내산업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는 품목의 경우 과감한 관세 인하를 통해 수입제품 간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
 - 미국-EU-일본 간 경합 품목의 경우 한-미 FTA 수준의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미, EU로의 수입선 전환을 통해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

협상전략 기초

□ 한-미 FTA를 협상의 가이드라인과 지렛대로 활용

- EU와의 협상은 한-미 FTA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여 결국 ±5%에서

63) Copenhagen Economics(2007), 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2007.3

타결될 전망

- EU는 서비스시장과 정부조달시장 등에서 한-미 FTA 이상의 것을 요구 하겠지만 한국은 반대 입장

한-EU FTA와 한-미 FTA 비교(2006년 기준)

		단위	한-EU FTA	한-미 FTA
경제 규모	인구	億名	4.9	3
	GDP	兆달러	14.5	13.2
	인당 GDP	달러	29,465	44,190
	수출입	兆달러	8.1	2.6
對韓 경제관계	수입	億달러	492	432
	수출	億달러	302	337
	FDI(누계)	億달러	424	366
협상 일정	협상 선언		2007.04.23 (EU 일반이사회 승인)	2006.02.03 (美 상원의원 발표)
	개시		2007.05.07 (1차 협상)	2006.06.05 (1차 협상)
	협상 경과		연내 네 차례 회의 예정	8차 협상 진행
	타결		늦어도 2008년 상반기 예상	2007.04.02
양측 협상대표			김한수(통상교섭본부 FTA추진단장)/ Garcia Bercero(통상총국 동아시아 국장)	김중훈(APEC 대사)/ Wendy Cutler(USTR 대표보)
주요 쟁점	투자		투자자-국가 소송제 제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포함
	농업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등 비교역적 기능 인정 (가공농산물 개방 확대)	예외 없는 개방(쌀 제외)
	서비스시장		포지티브 방식 주장(EU)	네거티브 방식 주장(미국)
	지적재산권		모조품, 지리적 표시제 보호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노동기준		큰 쟁점은 없을 전망 (미국과의 재협상이 변수)	ILO 수준에서 재협상 요구
	관세양허		향후 10년 내 95% 철폐	상품 100% 관세철폐 (94% 품목 3년 내 철폐)
경제적 예상효과 (KIEP)	국내총생산 (GDP)		2~3%(자본축적) 1.2~2%(정태적)	1.28%(자본축적) 0.32%(정태적)
	수출		단기 64.7億달러 증가 장기 110.4億달러 증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23.4億달러 증가
	고용		장기적으로 30~59萬名 증가	장기 8.3萬名,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시 33.5萬名 증가
한국과의 FTA 의의			아시아 국가와 최초의 FTA	멕시코 이후 최대 규모의 FTA

- 한-미 FTA의 비준을 EU와의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
 - 한-미 FTA가 예정대로 비준·발효될 경우 EU는 협상을 가급적 조기에 타결하고자 노력할 것임
 - 따라서 EU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

□ EU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채널의 협상전략을 전개

-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가 연합체이므로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
 - 산업구조와 소득수준이 다르므로 국가마다 한-EU FTA에 거는 기대와 관심 분야가 차이
- 따라서 필요하다면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도 전개할 필요
 - 133조 위원회와 EU 상주대표위원회(COREPER)⁶⁴가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구

□ 한-EU FTA를 통해 한-일 FTA 협상의 재개를 유도

- 한국시장에서 미-일-EU는 치열한 경합관계
 - 자동차, 화학, 기계 등 전통 제조업은 물론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가 시장을 놓고 경합 중
- 한국이 미국에 이어 EU와도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
- 따라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일본이 한국과의 FTA 협상 재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

64)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의 약자로 EU에 파견된 회원국 대사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각료이사회 자문기구

분야별 협상전략

- 관세양허 협상은 EU-멕시코 FTA를 기본모델로 하되, 한-미 FTA를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할 필요
 - 한국과 EU는 1차 협상에서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
 - 일반품목은 즉시, 3년, 5년내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민감품목은 5년 이상의 기간을 인정
 - 향후 협상에서 멕시코가 얻어낸 관세양허 수준의 비대칭적 양허 스케줄을 얻어내도록 노력할 필요
 - 민감품목의 경우 멕시코는 최장 7년, EU는 3년에 걸쳐 관세인하에 합의
 - 특히 민감품목의 경우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가급적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관세인하가 요구
 - Copenhagen Economics 연구결과(2007)에 따르면,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 수입시장에서 EU의 점유율은 14.7%에서 20.5%로 상승 전망

《 EU-멕시코 FTA의 공산품 관세양허 》

- ◇EU는 멕시코産 공산품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수입관세를 인하
 - 카테고리A 품목 : 발효 즉시 철폐
 - 백색가전, 휴대폰, 컴퓨터 등 非민감 품목
 - 카테고리B 품목 : 3년내 철폐(발효 즉시 30% 인하하고, 나머지 관세는 매년 1월 1일에 같은 비율만큼 인하하여 2003년 1월 완전 철폐)
 - CTV 등 AV가전, 자동차, 섬유류, 신발, 철강 등 민감 품목
- ◇멕시코는 EU産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4가지 방식으로 인하
 - AnnexII-A 품목 : 발효 즉시 철폐
 - AnnexII-B 품목 : 4단계 인하 → 2003년 1월까지 모두 철폐
 - AnnexII-B+ 품목 : 인하스케줄에 의거, 2005년 1월까지 완전 철폐
 - AnnexII-C 품목 : 인하스케줄에 의거, 2007년 1월까지 완전 철폐

-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관세인하 대상 품목으로 EU는 한-미 FTA 수준의 관세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EU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관세인하를 얻어내도록 딜(Deal)을 시도
 - 독일 자동차업체가 실질적인 협상파트너
 - 국내 자동차업체의 현지 생산량이 증가할 것을 고려한다면 자동차 부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이 중요
- EU가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14%의 관세를 조기 인하하는데 주력

□ 통관절차와 税番 변경으로 인한 관세 上의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제거

- 회원국 세관 행정의 부조화로 인한 원산지 오류,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주력
- FTA 체결을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세번 변경으로 인한 관세인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조치를 요구
 - LCD모니터, MP3플레이어 등 IT제품

□ 서비스시장 개방 폭은 한-미 FTA 수준을 넘지 않도록 노력

- 한-미 FTA에서 양국은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 미래를 적용시점으로 하는 최혜국(MFN)대우의 원칙⁶⁵⁾을 적용하기로 합의
 - 분야별 시장접근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
- 한-미 FTA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EU에게 서비스시장 개방을 양허
 - 한-미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사안을 EU에게 개방하면 미국에도 함께 개방해줘야 함⁶⁶⁾

65) 최혜국대우(MFN) 원칙이란 FTA 체결국에 제공하는 개방 혜택을 한미 양국이 서로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66) 예를 들어 의료 등 서비스분야를 한미 FTA 체결 때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 한-EU FTA 때 최혜국대우의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하면 미국은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해당 시장의 개방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공산품 분야의 관세 양허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서비스시장의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
- 반면, 한국은 EU 국가들의 통신규제 적용시 비차별적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 허가절차의 투명성, 통신 분쟁 해결절차 원칙 등 WTO plus 조항을 요구
 - 특히 EU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의 요건을 확실히 보장받는 것이 중요

□ EU의 무역구제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한-미 FTA 협상에서는 미국의 무역구제조도를 바꾸는 데 실패
- EU는 무역구제조치의 개선을 위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⁶⁷⁾이므로 한국은 FTA 협상을 통해 국내 수출업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전달
 - EU의 반덤핑규정 및 운영상 문제점(p.58~59 참조)
- 반덤핑 규제로 인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및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
 - 무역위원회와 EU측 무역구제기관 간의 협의회 기능을 대폭 강화

□ EU가 강하게 요구해올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약속할 필요

- 한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적극 소개하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근 평가를 방어논리로 활용
- 공격적인 입장에서 일부 EU회원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지적
 -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 기존 회원국 중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스웨덴 등도 미국의 지적

67) EU집행위는 2006년에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개혁 작업에 착수했는데, 스웨덴, 영국 등은 반덤핑규제의 개혁을 가장 환영하는 국가 중 하나인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무역방어조치의 발동을 규제하려는 EU집행위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

재산권 감시대상국에 포함

- 하지만 향후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집중 제기해야 할 입장이므로, 한-EU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EU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갈수록 높아지는 EU의 기술장벽을 돌파
 -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은 EU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기술장벽을 낮출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한국도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

-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관련한 협상에서는 한-미 FTA와의 양립성 문제를 고려
 - 한국과 EU는 모두 주요 농산물 수입국으로 SPS 분야에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양자 간에 큰 쟁점은 없을 전망
 - EU는 EU-칠레 FTA 수준에서 타결을 희망
 -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상한 돼지고기(EU)와 인삼(한국)의 검역 및 위생절차 문제는 연계하여 처리
 - 한-EU FTA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양보할 경우 한-미 FTA의 SPS 규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제무역을 다루는 바이오안전성협약을 비준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소지
 -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WTO의 SPS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합의할 필요

- 자본이동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에 합의
 - 한-미 FTA에서는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데 합의
 - EU도 자본이동이 경제통화동맹(EMU)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자본이동 및 경상거래를 최장 6개월 동안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
 - 따라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명문화
- 노동기준은 미국 의회에서 문제삼지 않을 경우 EU와의 협상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전망
 - 다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과 관련하여 개성공단의 저임금 노동 문제가 노동기준으로 제기될 가능성
-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EU로부터 역외가공 및 관세 환급을 인정받는데 주력
 - 역외가공 인정 품목과 관세 환급 허용기간을 최대한 확보
-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 대기오염 및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환경정책을 비관세장벽으로 몰아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환경과 무역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환경정책이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
 - EU 환경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화와 함께 업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채널을 상설화
 -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 될 REACH의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기업들의 등록·평가·심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

-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국내기관이 제반 이행과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

□ EU의 가공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

- 돈육(돼지고기), 와인, 위스키, 낙농품 등 가공농산물에 대한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수용 폭 결정
- 공산품을 연계하여 관세인하 협상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
- 농산물 관련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 문제는 무역확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대상품목 수를 최소화

『부록1』 EUCCK의 『2006년 무역장벽백서』 요약

분야	주한EU상공회의소의 요구사항	한국정부 입장
<p>자산 및 증권</p>	<p>·주요 규제 관련 환경: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 ·금융허브 개발: FATF에의 가입 지연시키는 이슈 해결, 세금완화 및 EU 외국인학교 설립 ·비핵심사업의 아웃소싱 compliance와 리스크관리분야로 아웃소싱 확장 필요 ·인가와 관련된 이슈 처리 가능한 one-stop department 도입 ·주문: 1)펀드매니저가 자기의 ID로 만든 계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주문에 따라 분배 허용 2)개인투자자 아이디 없이 하나의 증권사 계좌아래 각 선물 고객들을 위한 하위계좌로 거래 가능토록 허용 3)KOSPI 선물과 옵션 거래하는 고객들 간 상호거래 허용 ·전문자격증 제도 중개인에게도 적용 ·해외펀드: 1)판매사와 연계없이 해외펀드 등록 2)해외펀드들의 국내 프로모터들이 개별 판매사들과 판매계약 협상 3)투자펀드에 대한 세금조치 동일 적용 4)해외 운용사 및 판매회사들이 국내 자산운용사에 수수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5)UCITS-3 고려 6)해외펀드들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은 해외펀드가 가지고 있는 법적 요구사항 이내로 시행 ·해외운용사들: 자본금 요건 그룹단위로 적용 ·펀드 매니저의 자산명세 공시를 금지하도록 개정 ·소액 펀드들의 해지: 사전에 정해진 금액 이하의 펀드에 대해서 자산운용사들은 해당 펀드들을 판매사에 사전 통지 없이 상환, 자산운용사들이 감독기관에게 해지승인 요청 ·해외에서 한국펀드 판매 원하는 판매회사에 대한 자산운용업법 적용 명확화 ·지사 간 설비 공유 제한은 논리적인 관점에 초점 ·직접 판매: 1)자산운용사들의 직접 판매 전부 허용 2)자산운용회사들의 수탁고가 자체 시스템 갖출 때까지 외국시스템 사용토록 허용 ·연금 개혁: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공유 희망 ·대량주문 시 고객별 일임계좌 일입사 계좌로 모아서 공동주문, 그 결과 배분 가능토록 허용 ·해외펀드의 국내 판매 시 금감위 신고는 판매회사와 연계하지 않고도 가능 ·운용자산규모 산정 시 그룹단위의 적용 필요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펀드는 판매사의 동의 없이도 전부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p>	<p>·현행의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06.8.8일, FATF의 ‘옵저버 국가’로 결정되어 제도 개선 가속화. 외국법인의 금융소득 조세혜택 부여는 OECD의 국제기준에 상반되어 수용 곤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2008~2009년 미국계, 영국계 외국교육기관 설립 예정 ·compliance는 개별 금융회사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별로 두는 것이 바람직 ·금감위와 금감원은 지리적으로 한 건물에 위치하므로 one-stop service ·1)펀드매니저의 별도 ID 통한 모계좌 허용 불필요 ·2)국내에서 선물업 허가 받지 않은 외국의 중개업자는 고객들의 하위계좌 개설토록 하여 자신의 계좌로 선물거래 수탁 불가 3)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허용 불필요 ·제안사항 모호, 검토의견 작성 곤란 ·1)외국자산운용사가 국내대리인 통해 외국펀드 판매신고를 할 수 있도록 06.4.27 간투법 시행령 개정 2)국내 대리인은 외국 운용사와 국내 판매사들 간의 판매대행 계약 체결보조 가능 3)국내·외국펀드에 대해 동등한 과세기준 적용 4)국내 대리인은 외국 운용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 수취 가능 5)UCITS-3 고려, ‘외국펀드 적격기준’ 개정작업 진행 중 6)국내투자자 보호, 국내펀드와의 형평성 위한 최소한의 공시요구사항 ·자본금 요건은 국내의 회사에 대해 동일 적용, 해외운용사에 대해서만 그룹단위 별도 기준 적용불가 ·향후 시장상황 종합적 고려, 펀드운용 정보의 공시수준 검토 ·자산운용회사는 펀드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금감위의 승인 없이 임의 해지 가능, 금감위의 승인을 얻으면 펀드규모에 관계없이 해지 가능 ·국내펀드를 외국펀드판매회사가 해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 시 간투법에 따른 판매회사 등록요건 적용 않는 것이 타당 ·시행령 개정으로 동 사항 반영 ·1)향후 한도소진 여부 감안, 한도 확대 여부 신중히 검토할 예정 2)간접투자정보의 부당한 이용가능성 및 이해상충 우려 없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외국시스템 활용 가능 ·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 검토 ·포괄주문의 허용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예정 ·판매회사와의 연계 없이도 가능 ·동일계열이라는 이유로 법적실체가 다른 운용사들의 자산운용 수탁고를 합산, 운용자산규모 산정하는 것은 국내 투자자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위배 ·현행 제도하에서도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의 경우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해지 가능</p>

<p>자동차</p>	<p>1. 승용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험 관련> ·제작사의 OBD(On Board Diagnostic system) 자체성적서 인정 ·가솔린 승용차의 OBD 100% 도입을 2009년으로 연기 ·정식인증기관이 항시 사륜구동차량의 연비시험 장비 갖추어 때까지 제작사 자체 성적서 인정 <자기인증 및 안전기준 관련> ·자동차 신기술 도입 허용 ·EU 및 UN/ECE 자동차 범퍼시험 인증서 인정 ·최근의 자동차 제작기술 반영, 도난방지장치 기준 개정 ·차량용 레이더 인증: 신속한 기술표준범규 및 인증절차 제정</p> <p>2. 상용차 부분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EURO 4 기준 시행 관련: 1)DPF+EGR: 경유의 황 함량(10ppm) 필수 2)SCR: 후처리 장치 첨가제(UREA) 공급시설 구축 필수, 내구성시험: 열화계수(DF) 산출시험 EU 승인치 인정 3) 운행 중인 자동차 보증: (EU형 인정) ·대형 상용차 소음인증 관련 EU법규(ECE R51)와의 조화: 시험 차량 선정기준, 시험횟수, 양산차 기준치 EU 법규(ECE R 51) 내용과 조화 <형식 승인 및 안전시험 관련> ·자동차의 차폭 기준인 2.5m를 유럽기준인 2.55m로 개정 ·트랙터의 경우 번호판 부착위치를 왼쪽부분에 설치토록 허용 ·운행 중 도로에 직접적 영향 주지 않고 상호보안성 목적으로 설치된 부착물 차량의 총 폭에서 제외 <이륜차> ·이륜차 재산권 부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제도를 사륜자동차와 동일한 등록제도로 개선 ·대형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규정 재검토</p>	<p>·현재 상태로 동 건의사항 수용불가. 그러나 환경부에서 자동차 환경인증제도 개선 위한 작업을 수행 중이며 동 작업과정에서 EUCCK측 의견 반영 여부 검토 ·현 단계에서 적용시기를 유예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 예상되어 요구 수용 불가 ·측정 곤란한 자동차는 국내·외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적서, 자동차제작사의 자체시험결과로 대신 가능 ·사안별로 검토,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도입 가능토록 이미 제도화 ·국내와 유럽의 범퍼시험 기준 상이하여 수용 불가 ·현행 기준에서도 옵션채택 가능하므로 수용 불필요 ·금년 중 관련인증절차 제정여부 결정 예정 ·1)실제로는 10ppm 전후로 보급되고 있으며 30ppm 이하에서도 DPF 성능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 장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는 국내에서도 10ppm 이하 경유 보급 예정 2)지정열화계수 적용 시 내구성시험이 필요 없으며 유럽내구 시험결과 인정 위해서는 국내절차에 따른 검증 필요 3)2009년 1월부터 신규인증에 한하여 OBD 장치 인증 받아야 하며 현재 EU형 OBD 적용 계획 중 ·유럽에 비해 국내 법규가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없음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일반적 허용은 불가 ·뒤쪽 번호판과 관련 EU측에서 제시한 왼쪽과 국내 법령상 중앙에 부착할 경우 시인성에 대한 비교·분석 통해 실효성 검토 필요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는 장치라도 자동차의 차폭 기준 2.5m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 가능 ·이륜차의 등록제도로의 전환 위해서는 상당기간과 예산이 소요, 비용·편익 분석 통해 검토 ·대형이륜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여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우려, 당분간 진입 허용 불가</p>
<p>농약</p>	<p>·원제의 동질성 평가 기준 부재 ·식이 안전성 평가: 농업과학기술원에 의해 설정된 ADI를 MRL 설정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 ·제품에 대한 유효성분 허용 기준 부조화(FAO specification): 농약제품 유효성분의 +/- 허용 기준 도입 ·FAO code of conduct 기준의 전반적 도입 ·식품 안전성: 농약의 등록단계에서 해당 작물에 대한 MRL(혹은 IT) 설정</p>	<p>·일괄적인 자극성, 감각성 시험 성적서 요구는 부담 ·이미 ADI를 MRL 설정 근거로 사용, 명문화 위한 제도 보완 중 ·FAO에서 정한 유효성분 허용기준 참고하여 시행, 전면시행 여부 검토 중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 농약관리법 개정 통해 로테르담 협약이행근거 마련 ·MRL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분은 Codex의 MRLs 적용하도록 식품공전에 규정, Codex에도 기준이 없을 경우 유사 농산물의 농약잔류기준 중 최저기준 적용</p>
<p>은행</p>	<p>·외국계 은행의 현지통화 표시 채권 발행 허용</p>	

<p>건설 및 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강기: CE검사 및 인증 추가적 재검사 없이 수용 ·압축기: 산업압축기는 8%의 수입세가 부과되어 EU의 기계제품은 매우 불리한 조건에 직면 ·건축자재에 대한 현재의 8% 수입관세는 이 분야에 진출해 있는 EU기업에게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 ·새집증후군 규정 시행: 석고제품의 재료와 관련된 규정은 극도로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반면, EU 전역에서 금지되어있는 석면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분야는 해당국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각국의 환경과 실정에 부합되는 안전수칙 제정·운영하는 것이 당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8%의 관세는 동 품목에 한정된 사항이 아니라 한국의 기본관세율로 EU국가에만 불리한 건 아님. 다만, 동 물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낮은 관세율 적용 또는 감면혜택 부여 ·건축자재를 포함한 공산품의 관세율이 대체적으로 8%이므로 유럽에만 불리한 것 아님 ·공동주택에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금지, 환경부가 주관하여 석면정책협의회 구성, 석면의 효율적 관리 위한 제도개선 논의 진행 중
<p>화장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는 표시기계의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규정의 국제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포장상의 외국어로 표기된 제품명 및 효능에 대하여 표시 및 광고 위반사항으로 규제 금지 ·주름개선제품에 대한 기능성 성분의 설정 어려운 경우, 기능성 성분 설정 없이 완제품에 대한 시험자료로 기능성 심사가 가능토록 개선 ·동일라인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 1)화장품을 의약품적인 기준에서 심사하고 있어 화장품 특성에 맞는 제품개발 오히려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 2)아주 제한적인 원료의 교체에 대해서만 자료 면제를 허용하고 있어 회사들의 제품개선의 노력과 의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면제 허용 범위를 확대 ·규정된 자외선 차단 성분의 한도 범위 내로 사용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제품상에 실제 측정된 자외선 차단지수보다 낮게 표기된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용 ·부수적인 기능으로만 SPF를 표기한 제품: 1) 부수적인 기능으로만 SPF를 표기하는 비자외선 차단제품은 기능성화장품 대상에서 제외 2) 부수적인 기능으로 자외선차단지수를 표기하는 “SPF15 이하의 제품”에 대해 관련 자료 면제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되 실질적인 품질관리 면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의 제조 증명 검토: 1) 제조업자와의 형평성 고려, 수입 전의 제조증명의 검토과정 삭제,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과 수입제품도 시장에서 사후로 관리 2)전성분 표시가 도입이 될 경우 통관 시의 수협이 제조증명서 제출 폐지 ·화장품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조항 현실성 있게 조정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1)화장품법상의 표시, 광고 운영체계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가티브 리스트 운영체제로 조속히 개선 2)기업이 수행한 “피부에 대한 반응검사를 거친 제품”이라고 제품상 표시 허용 ·2차 포장의 외부에 사용되는 쉘링 위한 셀로판의 사용 포장횟수와 상관없이 허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품에 대하여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의 효과 표시하려면 식약청장의 사전심사 필요 ·이들 성분들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및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검토, 타당성 확보되면 완제품에 대해서도 심사 승인 ·1)기능 입증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국내사 및 일본기업의 대부분의 경우 대조군과의 비교실험 수행, 일부 EU기업에서도 대조군과의 비교실험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용 전후 비교하여 그 결과 입증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 타당하지 않음 2)제품의 기능에 변화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분 변경되면 자료 면제 ·몇몇 회사의 편의를 위해 표시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실제 차단지수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 ·1)부수적으로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기능성화장품에 해당 2)SPF15 이하의 자외선차단 제품의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 목적 주기능으로 사용 가능,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중에 자외선차단이 주기능인 SPF15 이하 제품이 많음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가 간 상호인증 되었거나 식약청장이 정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검사 면제 ·1)국내 반입 전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2)제조업자와 형평성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수입자의 통관예정 보고 승인 시 제조증명 검토과정은 필요 ·오히려 행정처분 개별조항 위반사항에 비해 다소 가볍다고 판단 ·1)현행 화장품 법령상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 2) ‘피부과의 테스트 완료 혹은 알러지 테스트 완료’ 및 ‘비교 광고’가 부분적으로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품질이나 효능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 있는 표시 ·화장품만 별도로 포장횟수 상향 조정할 수 없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예외 인정 가능 ·화장품만 포장공간비를 상향조정 불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예외 인

	<p>·화장품의 경우도 의약품과 같이 포장방법 중 포장공간비율 삭제하거나 20%로 포장공간비율 설정. 화장품의 사용행태 고려 종합제품에 대한 기준 50%로 완화</p> <p>·향수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p>	<p>정 가능</p> <p>·'04.9월 향수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폐지 추진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향수 등 일부품목의 과세 유지 결정</p>
<p>식음료</p>	<p>·사실과 다른 때와 허위로 신고한 때를 구분, 관리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작업 신속히 진행, 수입업소의 위반사안의 경우도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품목 및 품목류”별로 구분,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되도록 개선</p> <p>·안전성이 검증되어 국제적으로 허용된 첨가물이라면 수입 허용되도록 식품첨가물의 승인절차 가속화</p> <p>·내추럴치즈의 소분 판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 식품에 “치즈류 및 치즈” 추가</p> <p>·수입식품/건강기능 식품의 표기 스티커 수정 허용</p> <p>·수입식품/건강기능 식품의 구분유통증명서 제출: 이를 개선, 6개월에 1회, 또는 연 1회에 한 번씩 구분유통증명서나 시험성적서 제출</p> <p>·차, 허브차 제품의 수분함량 국제적 수준인 최고 12% 또는 13%로 허용</p> <p>·콜라형 음료에 대한 현재의 카페인 함량 기준 완화</p> <p>·유제품 무작위 검사: 1)무작위검사 비율을 현 식약청의 비율과 동일한 3% 미만으로 설정 2) 무작위 검사기간을 현행법에 명시된 5일 이내로 지킴 3)시료수 최소화 수량으로 유지</p> <p>·자연 치즈와 가공 치즈의 분류: 치즈 분류 2개로 단순화</p> <p>·수입생수에 부과되는 수질개선 부담금: 본 세급 규제는 수입 생수제조업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간주, 국내 수도공급체계와 무관한 관계로 제도 폐지</p> <p>·녹차, 홍차 및 땅콩버터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인하</p> <p>·맥주의 수입관세: 현 30%의 맥주관세를 10%로 인하</p> <p>·불법유통 맥주 근절: 불법유통 맥주 단속 횟수 연간 최소 4회로 늘리고 보다 철저하게 단속</p>	<p>·이미 행정처분 내용 사안에 따라 구분 및 차등·세분화</p> <p>·한국도 제 외국과 같이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식품첨가물 승인제도를 각각 운영, 현재 한국에서 미 지정된 식품첨가물이나 상이한 사용기준의 경우 시정요청 시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신속히 일련의 과정을 거쳐 허용</p> <p>·치즈류는 식품위생법상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대상 품목이므로, 현행 법령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 식품에 “치즈류 및 치즈” 추가는 불가. 다만, 현재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식품안전처 신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통합예정이므로 신설이후 긍정적 검토 가능</p> <p>·건강기능식품은 잘못 섭취할 경우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표시사항을 엄격하게 관리, 위·변조방지 및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방지 통해 소비자 보호</p> <p>·국내에서는 아직 GM 농산물이 재배되지 않으나 수입자와 동등한 수준의 제도 준수, 사후관리사항도 동일 적용</p> <p>·곰팡이의 경우 13% 수분에서도 번식 가능. KFDA는 건조다류 수분함량의 영향에 대해 검토 예정</p> <p>·적절한 과학적 근거 없이 식품첨가물 허용 않는 것이 아님</p> <p>1)무작위 검사비율은 품목/국가별 검사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적합한 경우 검사비율이 낮아짐. 축산물은 일반식품보다 위험도가 높으므로 식약청과의 단순비교로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 2)정밀검사는 5일 이내 완료가 원칙. 가온보존 검사대상은 제외 3)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500g 또는 ml)의 범위 안에서 채취,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 존재 시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 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이상 수거</p> <p>·자연치즈에 대한 세부유형 현행 12개에서 4개로 단순화. 현행 기준 CODEX 국제기준 규격에 따라 개정하는 방향 검토 중</p> <p>·수질개선부담금은 국내와 수입제품에 동등 부과, WTO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먹는 물의 수질개선목적은 국가의 공공급수인 수도물에 대한 개선이므로 국내업체 보호 위한 보조금에 해당 안됨</p> <p>·차류, 버터에 대한 관세를 인하는 곤란, DDA 농작물협상 진행 중이므로 다자간 협의 통해 협의</p> <p>·맥주는 일부 원료가 국내에서 생산, 관세인하는 민감한 사항</p> <p>·관세청은 불법거래 조직 적발에 중점 두고 단속활동 전개. 다만, 면세맥주의 불법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한 시중단속 횟수 관계없이 실시</p>

<p>노동 기준</p>	<p>·복합 연령기반 임금체계는 일자리와 노동생산성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생산, 노령화 사회에서 조기퇴직, 비합리적 임금격차, 고용주의 중년, 노년 근로자 기피현상 발생</p> <p>·노동자가 헌법이 명시한 기본 노동권 범위를 벗어나는 노조 행위 시, 해당 노동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관계법에 따라 엄정한 대처</p> <p>·2006년에 도입된 신연금제(한정보수 또는 한정소득)는 한국의 연금체계의 향상 도모, 노동계 다수가 기존의 퇴직금 고수 시 많은 기업들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 정착될 향후 5년 이상 동안 복합연금시스템으로 인한 혼란 직면</p> <p>·파업노동자 교체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허용</p> <p>·보험 모집인 노조결성에 대한 입법 움직임은 보험사에게 재정적 역효과 및 관리적 부담감 초래</p>	<p>·인플레이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임금인상모델을 협상을 통해 적극 개발하고 배포할 계획</p> <p>·노동부는 의견을 수용해 대책 강구</p> <p>·개별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설정이 가능한데,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며 퇴직연금제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하기 위함</p> <p>·기업별 노사관계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대체근로 무제한 허용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상실케 할 우려 존재.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은 곤란</p> <p>·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보호방안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문제는 노사간 이견이 큰 사항으로 향후 노사정위 논의 결과와 각 직군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대책 마련</p>
<p>보험</p>	<p>·경영의 자율성: 1)보험상품 인가절차가 비현실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상품개발이 곤란 2)금융감독원이 감사기간 동안 일부 원보험사들의 기존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협상 지시했지만, 개별보험사는 자사의 위험성향 반영한 재보험 선택할 권리 있음. 3) 보험사의 파생금융상품 판매규제는 신상품 개발 저해하고 보험·은행·증권간 경계 없애고자 하는 정책목적에도 반함. 4) 변액보험상품에서 새로운 형태의 영업수수료 부과 체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p> <p>·투명성/일관성/안정성: 1) 신계약비 및 사망위험률표와 같은 기준 및 규제의 잦은 변화로 인해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자에게 혼란 초래. 2) 부실고지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p> <p>·불공정 경쟁: 1) 유사보험의 감독 일원화 추진. 2)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완화. 3) 국내 데이터 해외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규제심화로 해외 전문가 의견 반영 어려움 및 이중비용 발생</p> <p>·재정의 건전성: 1)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최후의 보루 역할 하기보다는 부실 경영의 문제 안고 있는 보험사 지원하는 역할.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에 있어 진정한 최후의 의지수단이 되어야 할 것. 2) 분담금의 부과 또한 새로이 검토되어 은행이 적정치보다 적은 분담금 내는 일이 없어야 하며, 건전한 보험사일수록 적은 분담금을 내야하고, 상품 수수료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수준에서 책정</p>	<p>1)신상품 신고 시 관련법규에 부합, 계약자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해당상품 신고수리 2)감사기간 중 기존 재보험계약 재협상 지시한 사실 없음 3)파생금융거래 관련 개선안 마련 중으로 보험업계 의견 수렴, 규제 대폭 완화 계획 4)새로운 영업수수료 체계 도입 시 보험계리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하므로 제도 도입여부 중장기적 검토</p> <p>1)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라 기초율 반영 통한 보험료 산출은 각 보험회사가 자율결정 2)현재도 부실 고지한 보험계약자에 불이익 조치 가능</p> <p>1)유사보험 감독 일원화와 관련한 법안 국회계류 중.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통해 보험회사와 유사보험간 불공정 경쟁문제 지속적으로 개선 예정 2)방카슈랑스 영업 관련 규제는 향후 제도 정착 주이 검토, 점진적으로 완화 3)고객정보의 해외소재 계열회사 송부는 단순정보처리 목적이라도 금지. 데이터 해외 이전 허용 문제는 신용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위해 신중한 검토 필요하므로 외국사례 조사·연구 중</p> <p>1)예금보험공사는 2003년 이후 신예금보험기금의 출범으로 기금 손실 최소화 위해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상시감시 기능 강화 2)금융기관이 납부한 보험료는 업권별 계정에 구분되어 적립되며 보험사고 발생 시 해당업권 내 계정에서만 자금이 지원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금융업권 또는 금융기관별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보험료 납부가 바람직하므로 예금보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 향후 이해관계자와 논의하여 개선방안 확정</p>
<p>법률 서비스</p>	<p>·한국의 법률시장: 1)외국인 법률고문으로 등록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외국변호사로 정식 인정 2)한국 변호사/로펌과 동업, 함께 법률사무소 설립, 이틀 고용</p> <p>·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최근의 진전 상황과 미래 전망: 한국정부가 2003.3.31에 WTO에 제출한 법률시장 개방 양허안 초안에는 외국 로펌이 한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 하지만, 한국로펌이 외국변호사 고용하는 것이 관행. WTO에 대한 당해 양허안 초안이 장래에 법제화될 경우, 현재의 관행의 변화 여부 명확화</p>	<p>1)현재 입안 중인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 자문사가 원자격 취득국 법률과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 허용. 법률시장 개방은 양자 및 다자간 개방협상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만간 개방의 폭과 시기가 결정될 예정 2)국내 변호사와의 동업, 고용허용은 단계적 개방원칙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장래에 허용</p> <p>·외국법자문사법 제정, 외국 로펌의 국내지사 설립 및 자격취득국법, 국제법에 대한 법률자문 허용 계획. 그러나 외국 로펌의 한국 변호사 고용·동업은 향후 WTO, FTA 협상 결과에 따라 단계적 허용, 현 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한국 변호사 고용·동업 금지는 유효</p>

<p style="text-align: center;">지적 재산권</p>	<p>·검찰과 경찰의 집행: 1)지식재산권 소유자와 그 권리를 잘 보호하기 위하여 위반사범에 대한 벌금액과 벌칙을 더욱 엄격히 집행 2)지재권 소유자에 집행결과를 통지하는 것과 관련, 한국정부가 지재권 소유자에게 재산침해에 관한 정보 통보해야 하는 조항 시행 3)불필요한 순환근무 방지하고 로테이션 필요 시, 후임이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 필요</p> <p>·관세행정 및 국경조치: 1)관세청이 병행수입 절차 보완하고 개선 2)불법거래 및 밀수와 관련된 특정 품목에 대한 감시를 효율적으로 개선. 3)병행수입품 통관절차에 대한 규정 강화</p> <p>·위조품: 1)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성 보호 위한 명확한 감시 필요 2)관세청은 위조품을 포함한 불법행위로 판명되어 관련 물품이 압수되거나 그 수출입자가 처벌 받은 경우, 그 물품의 지재권과 관계된 권리자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p> <p>·위조 의약품: 소비자 안전보장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감시 필요</p> <p>·산업재산정책 및 보호: 특허청에 불법지재권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국내시장에서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p> <p>·온라인 지재권: 1)인터넷 도메인에서 지재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적극적 활동 2)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p> <p>·불법 소프트웨어 유통하는 개인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벌금 도입</p> <p>·현행법 변경: 저작권자로서 ISP 또는 호스팅 회사가 자체 서비스 감찰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 요청</p> <p>·게임 및 콘텐츠 등급: 1)현재 상태를 유지하여 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계속 질 것 2)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모든 게임 CD/DVD 자체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및 번호 표시</p> <p>·한국에서의 패키지게임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합법적인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G11의 요청 수용</p>	<p>·1)이미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 2)현재 침해는 주로 소규모 위조품 판매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상표권자에게 일일이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으며, 현재에도 관련 단체의 요청 시 충분한 정보 제공 3)지적재산권 관련 불필요한 순환근무는 없으며, 적절한 순환근무는 관련 공무원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과의 유착 근절하는데 기여</p> <p>·1)상표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병행수입제도 운영. 병행수입 인정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운영. 여타국도 한국과 유사한 기준으로 동제도 운영. 2)수입물품 검사율 선진국 수준 평균 5%로 유지, 불법제품일 가능성이 높은 상품군은 높은 검사율로 탄력적 운영 3)지재권 보호 관련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통일적 시행</p> <p>·1)가짜상품에 대한 적극적 감시단속 시행,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 침해하는 가짜상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홍보할 계획 2)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요청 시 제공 가능. 그러나 “권리자에게 피해사실 및 가해자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는 EU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운영하고 있다면 근거법령 등 세부내용 제공 바람</p> <p>·위조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업소에 대한 정기 감시 실시</p> <p>·특허청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 부여 기관, 이에 대한 집행은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특허청에서 집행기능 수행하는 외국 사례도 없음</p> <p>·1)도메인 선점에 의한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 처리 2)위조품 판매 해외사이트는 해당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p> <p>·사법 경찰권 가진 불법SW 상시 단속반 설치, 상시 단속활동 강화하여 SW 불법복제 방지</p> <p>·국제적 입법동향 고려, 일정 경우에 대한 도입 필요성 검토 계획</p> <p>·1)게임물 등급분류를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실시 예정 2)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국내의 모든 게임물 등급 심의, 심의된 내용은 게임 CD/DVD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번호 이미 표시</p> <p>·게임관련 단체의 설립은 자유</p>
<p style="text-align: center;">물류</p>	<p>·국제규격 팔레트로 교체</p> <p>·보세창고와 운송업자, 포워더의 세관 면허: 듀얼 라이센스 등록절차 복잡</p> <p>·종합물류 인증제: 이 시행 안이 EU물류업체에게는 불리, 인증제도 항목에 대한 배경 금급</p> <p>·인천공항의 비용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아시아지역의 다른 물류허브 수준으로 낮추어 유지할 것을 권고</p> <p>·인천공항 화물구역 내 안내표시 부족</p> <p>·제3국 외국 항공기 정규 운항 및 전세기 운항</p>	<p>·표준 규격인 T-11형을 EU규격으로 교체여부 곤란. EU규격으로 확대여부 중장기적 검토 필요</p> <p>·외국계 포워딩업체도 통관업시장 진입 가능</p> <p>·종합적 물류서비스 제공하는 물류기업 인증하여 화주와 물류전문기업 간 연계 용이하게 하여 3PL 비중 제고</p> <p>·인천공항은 주변 경쟁공항에 비해 저렴한 사용료 수준으로 사용료 인상 불가피</p> <p>·안내표시가 필요한 지점을 조사, 안내표지판 확충</p> <p>·제3국 등록 외국항공기의 운항은 세계 대부분 국</p>

	<p>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노동생산성을 포함한 전반적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전개 필요 ·선적지시 없이 송화인이 수출화물 컨테이너를 터미널이나 컨테이너 장치장에 반입하는 관례 존재 ·선사가 원하는 예선업체 자유 선정 ·실제 재측정된 DWT 초과선적하지 않는 한에서 재측정된 DWT 인정 ·울산항 야간 입출항의 전면적 확대 ·선박의 완벽한 차단시스템의 경우, 부두에서의 탱크청소 허용 ·GAS Free 선박에 대한 도선료, 예선료의 추가요금 폐지 ·울산항 묘박지 M9/M10의 정박선에 대한 야간 검역 실시 ·부산 북항만 확장 진척현황 불투명 ·래시(LASH) 노동력 공급: 크레인 당 5명에서 7명이면 충분 ·2006년 1월부터 부산 북항만 컨테이너에 대한 세금 폐지 	<p>가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국과 체결한 양자 간 항공협정상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예외적 운항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공사 설립 뿐만 아니라, 터미널의 생산성 향상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 추진 중 ·관련법 개정 및 터미널 운영개선방안 추진 ·예선 배정방법은 민간기구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바, 배정방법 정부에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재측정된 DWT의 인정은 항만 시설과 선박의 안전 위해 신중한 판단 필요 ·2006년도에 입항 2.5만톤GRT급 이하, 출항은 전면허용으로 확대 추진 중 ·시스템 조작과정에서 사고 가능성 완전 배제하기는 곤란하므로 부두에서의 탱크청소 불가 ·조속히 개선하도록 이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 촉구 ·국립울산검역소는 M9/M10 묘박지 야간 검역 시행 중 ·부산 북항만 개발에 대해 연구용역 추진 중, 동 용역 완료 후 구체적 개발계획 수립 ·선사가 lashing 업체에 지급하는 lashing 요금은 컨테이너 처리 개수가 기준. 신속한 lashing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판단 ·현재 항만 배후도로가 건설 중이므로 컨테이너 세금을 2006년 12월까지 현행대로 징수
<p>의료 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내 인증절차의 신속화 및 촉진을 위한 유럽식품의약품 안정청의 기존 검사보고서 제출자격 및 승인: G-Med 인증서 승인 ·우수 의료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 신청: ISO 9001이나 ISO 13485와 같은 고가 검사를 이미 마친 제조업체, 즉 GMP 가진 제조업체로부터 수입된 제품인 경우 면제 계속 유지 ·보건복지부의 법령 초안 및 개정예 핵심주력산업이 보다 적극적 참여: 의료기기 업계의 참여가 일회성 ·이전에 언급된 불이행에 대해 형사고발보다 행정적 벌금 징수 ·동일제품에 대해 정부부처에 따라 다르게 처리됨을 경험 ·항목별 등록: 항목별이 아닌 회사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 ·일회용 의료기에 대한 환급: 질적 수준과 안전도에 따라 환급에 차등 둔 국제규정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국 정부에서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 및 품질심사기관의 품질관리 적합인정서가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면 인정 ·품목허가 이후에 계속해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실시하는 제품이 허가 시와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는 국내 의료기기 GMP 제조업체에도 동일 적용.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경우 품목허가 이후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설정된 자가품질관리 시험 항목 중 외국 제조원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항목의 경우 국내에서의 시험 불필요 ·상한금액 결정절차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 예정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로 이러한 분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회에서 이를 법률로 제정 ·동일제품에 대해 법이 다르게 적용된 구체적 사례 제공 바람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자료검토가 필수적, 검토에 필요한 자료만 요구. ·현 규정에서도 유사품목과 비교하여 비용과 효과 면에서 뚜렷이 개선된 경우, 차등 둘 수 있음

<p>제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급여기준: 급여기준이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재정적 사유에 의해 설정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급여 결정과 상한금액 결정 이유가 명료히 설정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 불투명. 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이견 제출기회 보장 안됨 ·약물사용평가위원회(DUR): 복지부와 심평원이 정책의 결정이나 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 시행 전에 업계와 협의 ·A7조정 평균가: 신약은 한국 내에서 추가의 평가 없이 선진 7개국 조정평균가로 승인 ·실거래가상환제도(ATP): 조사대상 가격에 대해 분명한 기준 부재, 도매상 마진에 대해서도 허용 가능한 기준 부재, 다국적 연구 중심회사 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가격이 인하되는 결과 초래 ·3년 약가 재평가: 가격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을 혁신성에 대한 재평가 수단으로 보는 데 반대 ·약물경제성 평가 위한 정책방향 고려 시 논의 과정 참여 희망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약 품목허가 과정의 일환으로 제조시설을 조사하고 승인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서 발행한 분석증명서는 후속 수입분에 대한 국내시험에 같음 ·가교시험의 국제조화: 국제적 기준 ICH E5의 원칙 즉시 시행 ·지적재산권: 1)자료의 보호 조장, 이에 따른 모호함을 해결위해 '비공개'와 '비참조' 모두 보장되는 법 조항 마련 2)신약의 재심사절차 외에 한국정부는 무역 관련 TRIPS 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적절한 규제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자료보호 문제가 존재하므로, 국제적인 수준인 자료의 배타적 사용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강구 3)특허와 품목허가와와의 연결을 고려 4)위조의약품의 수입과 유통 사전에 억제되는 효과적 조치 마련 ·원료의약품 신고제도: 업계는 식약청이 모든 제조장을 실사할 것이 아니라 위험 정도에 따라 제조장 실사하는 접근을 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기준의 의학적, 과학적 근거 충분히 고려 ·약제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상한금액에 대해 제약업계에 사전 열람 기회 제공. 동 상한금액에 이의를 제기 시 업계 의견 추가하여 회의에 부의, 회의 결과 해당 업체에 통보 ·의약품 급여기준이나 병용기기 약물의 고시 전에는 반드시 입안예고 절차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경청. DUR위원회는 '06.2.3자로 폐지 ·1999년 AMCHAM 및 EUCCK 대표가 참여한 '의료 보험약가 기준개정을 위한 T/F' 결과,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만 A-7 가격 적용 합의,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합의에 반함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는 사전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개별 제품단위의 마진 고려 불필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관련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신 의료기술 등의 조정기준,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거 의약품실거래가 구입내역 조사하여 할인 등의 상한금액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근거 운영 ·A7 조정평균가를 약가 재평가의 기준 값으로 활용하는 것일 뿐, 약가재평가 제도가 혁신성을 재평가하는 것은 아님 ·약물경제성자료 제출 및 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의 수입품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의약품을 국내 수입하는 수입업자, 자가 품질검사는 수입자가 실시 ·가교자료제출 면제나 가교시험면제의 타당성 인정 시 가교시험실시 의무화하지 않음 ·1) 한국정부는 법령으로 신약 허가 시 제출된 자료의 부정확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자료보호 2)신약 재심사 제도 통해 6년 간 신약 제출자료 보호하는 점 감안, TRIPS 관련 적절한 규제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무근 3)WTO가 정한 국제기준 충실히 준수하여 이행, 특허와 품목허가의 연계는 TRIPS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 4)관계 당국은 정기적으로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 강력하게 단속 ·서류검토 결과 신뢰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우선 실태조사 실시, 제조공정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공정에 대한 적정성 수행 여부 중점 조사
<p>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징수 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의 과다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환급 관련 세법 개정 ·외국인투자자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이미 조세감면 승인을 득한 경우, 동 감면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증자 통한 감면사업 추가적 영위 시, 외국인투자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와 동일한 혜택 받도록 감면세액 산출방법에 관한 법규 보완 ·외국인이 내국법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 혜택 관련 법령 개정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적극적 활용: 일방적 APA도 쌍방적 APA와 같이 순조롭게 타결되도록 관련제도 효율적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국제기본법 개정 시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에 경정청구권 허용 방안 검토 ·감면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 실시 안함 ·자본금 증가 없이 내국인이 보유하던 기존주식을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소유주식 비율은 감면혜택 주는 외국인 투자비율에서 배제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도 외국인투자자로 간주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곤란 ·쌍방·일방 APA 차별 없이 납세자와 상호 이해·협조 바탕으로 원활하게 진행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특수관계 기업 간 변칙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관계자 간의 동일한 재화 거래 시, 동일 과세기준에 의한 과세액 결정 ·공동경비 손금 불산입 규정 폐지, 특수관계자 간의 경비 분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통한 손금 불산입 여부 판단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98조의 5 적용 대상 해외펀드로 한정, 조세회피지역 최소화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최소화와 납세자 위한 탄력적 운용 ·접대비의 범위를 향응성 접대행위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 ·합리적인 법인세 연결납세제도의 조속한 도입 ·외국증권회사 등의 평가 가액을 시가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대응조정 도입 시 거래 일방의 조세부담이 감소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 없어짐 ·비특수관계자 간에도 공동사업 영위하는 경우 임의적 경비배분 통해 조세 회피 우려 존재 ·동 제도의 대상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배당·사용료 또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적용, 특례제도 적용대상지역 지정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행태, 과거의 조세회피사례 종합적으로 검토, 신중하게 지정할 예정 ·국조법에 실질과세원칙 규정한 것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원칙 명문화한 것으로 선언적·확인적 ·접대비는 일정한도 내에서만 손비로 인정 ·2004년 세제개편시 연결납세제도를 직접 도입 보다는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중과세 문제 해결 ·국내 지점 없는 외국감정평가법인의 국내재산 평가 전면적 허용은 곤란
<p>와인 및 주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업체도 원하는 장소에 두 개의 하치장 추가 보유 허용, 제한적으로 개방. 2년 후 쟁점 없을 경우 완전 개방 허용 ·‘할인점용’ 상표 사용중지. 유통경로 표기 상표요건의 폐지가 주류업계의 최종 목표 ·유사상품 및 위조 수입주: TRIPS 의무의 적극적인 준수 및 수입 와인, 주류 관련 IPR, 상표, GI 보호의 엄격한 시행 ·한국정부는 기타 국가와 함께 주류제품의 관세 철폐를 위해 노력 ·접대비 규제(500,000원) 폐지 ·알콜 30% 이상 특정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추진은 WTO하에서 차별행위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생산업체는 도매업체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나 수입업체는 소매상, 유통음식업자에게도 판매 가능하므로 수입업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상표용도 구분표시는 국내와 수입제품에 동일적용. ‘할인매장용’ 구분은 주류 유통질서 확립 위함 ·한국은 TRIPS 의무 적극적으로 준수, 수입와인과 주류 관련 엄격한 IPR, 상표 보호 위해 지재권제도 검토 계획 ·한국은 주류에 대해 기본세율, WTO세율보다 낮은 협정관세 적용. 주류의 관세철폐는 일반음료와의 과세형평문제 발생. 주류에 따른 사회적비용 고려시 주류소비증가를 유발하므로 관세무세화는 곤란 ·금액기준 폐지 불가. 기업들의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운영 예정 ·‘05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알콜 30% 이상 주류만 대상으로 하는 건강부담금 부과는 차별적인 과세라는 행정부 의견 전달, 동 위원회에 계류 중

자료 : EUCCK, ‘2006년 무역장벽백서’

[부록2] 주요 EU FTAs의 관세양허표

< EU측 관세양허 비교 >								
FTA			EU-멕시코 FTA		EU-칠레 FTA		EU-남아공 FTA	
발효시점			2000.7.1발효		2003.2.1발효		2000.1.1발효	
품목명	HS코드	현행세율	멕시코산 제품		칠레산 제품		남아공산 제품	
			기본세율	무관세시점	기본세율	무관세시점	기본세율	무관세시점
휴대폰	8525207031	0.0%	0.0%	2000.7.1	0.0%	2003.2.1	0.0%	2000.1.1
DRAM	8542	0.0%	0.0%	2000.7.1	0.0%	2003.2.1	0.0%	2003.1.1
LCD판넬	853120	0.0%	0.0%	2000.7.1	0.0%	2006.1.1	0.0%	2000.1.1
프린터	847160	0.0%	0.0%	2000.7.1	0.0%	2003.2.1	0.0%	2000.1.1
HDD드라이브	847170	0.0%	0.0%	2000.7.1	0.0%	2003.2.1	0.0%	2000.1.1
PC용 모니터(CRT)	852841	0.0%	0.0%	2000.7.1	0.0%	2003.2.1	0.0%	2000.1.1
PC용 모니터(LCD)	852851	0.0%	0.0%	2000.7.1	0.0%	2003.2.1	0.0%	2000.1.1
TV용 모니터(CRT)	852849	14.0%	9.8%	2003.1.1	9.8%	2006.1.1	14.0%	2003.1.1
TV용 모니터(LCD)	852859	14.0%	9.8%	2003.1.1	9.8%	2006.1.1	14.0%	2003.1.1
노트북	847130	0.0%	0.0%	2000.7.1	0.0%	2003.2.1	0.0%	2000.1.1
컬러TV	852812	14.0%	9.8%	2003.1.1	9.8%	2006.1.1	14.0%	2003.1.1
브라운관(CRT)	854011	14.0%	9.8%	2003.1.1	9.8%	2006.1.1	14.0%	2003.1.1
냉장고	8418101030	1.9%	0.0%	2000.7.1	0.0%	2003.2.1	1.9%	2000.1.1
에어컨	841510	2.7%	0.7%	2000.7.1	0.0%	2003.2.1	2.7%	2000.1.1
청소기	850910	2.2%	1.8%	2000.7.1	0.0%	2003.2.1	2.2%	2003.1.1
세탁기	845011	3.0%	1.0%	2000.7.1	0.0%	2003.2.1	3.0%	2000.1.1
전자레인지	851650	5.0%	3.5%	2003.1.1	1.5%	2006.1.1	5.0%	2003.1.1
MP3플레이어	85209000	2.0%	1.4%	2003.1.1	0.0%	2003.2.1	2.0%	2003.1.1
DVD플레이어	852190	13.9%	9.8%	2003.1.1	9.8%	2006.1.1	13.9%	2003.1.1
VCR	85211020	14.0%	9.8%	2003.1.1	9.8%	2006.1.1	14.0%	2003.1.1
카메라	900651	4.2%	1.4%	2000.7.1	0.0%	2003.2.1	4.2%	2000.1.1
디지털카메라	85258030	0.0%	0.0%	2000.7.1	0.0%	2003.2.1	0.0%	2000.1.1
선박(유조선)	8901901000	0.0%	0.0%	2000.7.1	0.0%	2003.2.1	0.0%	2000.1.1
승용차	8703	10.0%	4.4%	2003.1.1	6.5%	2006.1.1	10.0%	2010.1.1
대형 승합차	87021011	16.0%	11.2%	2003.1.1	11.2%	2006.1.1	16.0%	2000.1.1
소형 승합차	87021091	10.0%	7.0%	2003.1.1	6.5%	2006.1.1	10.0%	2003.1.1
대형 화물차	87042131	22.0%	15.4%	2003.1.1	15.4%	2006.1.1	22.0%	2003.1.1
소형 화물차	87042191	10.0%	7.0%	2003.1.1	6.5%	2006.1.1	10.0%	2003.1.1
승용차부품(소형)	8708	3.0%	2.1%	2003.1.1	0.0%	2003.2.1	3.0%	2010.1.1 ¹⁾
승용차부품(대형)	8708	4.5%	3.1%	2003.1.1	0.0%	2003.2.1	4.5%	2010.1.1 ¹⁾
굴삭기	8429	0.0%	0.0%	2000.7.1	0.0%	2003.2.1	0.0%	2000.1.1
오토바이	871120	8.0%	5.6%	2003.1.1	4.5%	2006.1.1	8.0%	2003.1.1
자전거	871200	14.0%	10.5%	2003.1.1	10.5%	2006.1.1	14.0%	2003.1.1
타이어	4011	4.5%	3.1%	2003.1.1	0.0%	2003.2.1	4.5%	2000.1.1
철강	7219	0.0%	0.0%	2000.7.1	0.0%	2003.2.1	0.0%	2000.1.1
polyethers 등 대부분	3907	6.5%	0.0%	2000.7.1	0.0%	2003.2.1	6.5%	2003.1.1
polyacetals	39071000	6.5%	2.2%	2000.7.1	2.2%	2006.1.1	6.5%	2003.1.1
polyethylene terephthalate	39076000	6.5%	4.5%	2003.1.1	3.0%	2006.1.1	6.5%	2003.1.1
여성용의류	6202	12.0%	11.0%	2003.1.1	9.9%	2003.2.1	12.0%	2003.1.1
남성용의류	6203	12.0%	11.0%	2003.1.1	9.9%	2003.2.1	12.0%	2006.1.1
신발	6403	8.0%	5.6%	2003.1.1	4.5%	2003.2.1	8.0%	2003.1.1
스포츠신발	6404	17.0%	11.9%	2003.1.1	11.9%	2003.2.1	17.0%	2003.1.1
우산	6600	4.7%	1.6%	2000.7.1	1.2%	2006.1.1	4.7%	2000.1.1
시계	9103	4.7%	3.5%	2003.1.1	1.2%	2006.1.1	4.7%	2003.1.1
납시대	950710	3.7%	0.0%	2000.7.1	0.0%	2003.2.1	3.7%	2000.1.1
납시바늘	950720	1.7%	0.0%	2000.7.1	0.0%	2003.2.1	1.7%	2000.1.1

韓-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안전모	650610	2.7%	0.0%	2000.7.1	0.0%	2003.2.1	2.7%	2000.1.1
사람인형	95030021	4.7%	0.0%	2000.7.1	0.0%	2003.2.1	4.7%	2000.1.1
동물인형	95030041	4.7%	3.2%	2000.7.1	1.2%	2006.1.1	4.7%	2003.1.1
비디오게임기	95041000	0.0%	0.0%	2000.7.1	0.0%	2003.2.1	0.0%	2000.1.1
볼펜	960810	3.7%	0.0%	2000.7.1	0.0%	2003.2.1	3.7%	2000.1.1
연필, 크레용	960910	2.7%	0.0%	2000.7.1	0.0%	2003.2.1	2.7%	2000.1.1
화장품	3304	0.0%	0.0%	2000.7.1	0.0%	2003.2.1	0.0%	2000.1.1

1) 발효와 동시에 50% 인하

< 체결 국가별 對EU 관세양허 비교 >

FTA		EU-멕시코 FTA			EU-칠레 FTA			EU-남아공 FTA	
발효시점		2000.7.1발효			2003.2.1발효			2000.1.1발효	
품목명	HS코드	EU산 수입품			EU산 수입품			EU산 수입품	
		적용세율	기본세율	무관세시점	적용세율	기본세율	무관세시점	적용/기본세율	무관세시점
휴대폰	8525207031	18.0%	15.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DRAM	8542	0.0%	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LCD판넬	853120	23.0%	2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프린터	847160	6.0%	6.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HDD드라이브	847170	2.0%	2.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PC용모니터(CRT)	852841	23.0%	2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PC용모니터(LCD)	852851	23.0%	2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TV용모니터(CRT)	852849	23.0%	20.0%	2000.7.1	6.0%	6.0%	2003.2.1	25.0%	2012.1.1
TV용모니터(LCD)	852859	23.0%	20.0%	2000.7.1	6.0%	6.0%	2003.2.1	25.0%	2012.1.1
노트북	847130	4.0%	4.0%	2000.7.1	6.0%	0.0%	2003.2.1	0.0%	2000.1.1
컬러TV	852812	23.0%	20.0%	2000.7.1	6.0%	6.0%	2003.2.1	25.0%	2012.1.1
브라운관(CRT)	854011	18.0%	15.0%	2000.7.1	6.0%	6.0%	2003.2.1	25.0%	2012.1.1 ¹⁾
냉장고	8418101030	23.0%	20.0%	2007.1.1	6.0%	6.0%	2003.2.1	25.0%	2005.1.1
에어컨	841510	23.0%	20.0%	2000.7.1	6.0%	6.0%	2003.2.1	15.0%	2012.1.1
청소기	850910	30.0%	20.0%	2000.7.1	6.0%	6.0%	2003.2.1	20.0%	2012.1.1
세탁기	845011	30.0%	20.0%	2007.1.1	6.0%	6.0%	2003.2.1	30.0%	2012.1.1
전자레인지	851650	30.0%	20.0%	2000.7.1	6.0%	6.0%	2003.2.1	20.0%	2012.1.1 ²⁾
MP3플레이어	85209000	10.0%	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DVD플레이어	852190	13.0%	1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VCR	852110	13.0%	1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카메라	900651	18.0%	15.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디지털카메라	85258030	13.0%	1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선박(유조선)	8901901000	13.0%	10.0%	2003.1.1	0.0%	0.0%	2003.2.1	0.0%	2000.1.1
승용차(3000cc 이하)	8703	30.0%	20.0%	2007.1.1 ³⁾	6.0%	6.0%	2003.2.1	20.0%	2012.1.1
승용차(3000cc 이상)	870324	20.0%	20.0%	2007.1.1 ³⁾	6.0%	6.0%	2003.2.1	20.0%	2012.1.1
대형 승합차	8702	23.0%	20.0%	2003.1.1	6.0%	6.0%	2010.1.1	20.0%	2012.1.1 ⁴⁾
소형 승합차	8702	23.0%	20.0%	2003.1.1	6.0%	6.0%	2010.1.1	30.0%	2012.1.1 ⁴⁾
화물차	8704	23.0%	20.0%	2003.1.1	6.0%	6.0%	2003.2.1	10.0%	2012.1.1 ²⁾
승용차부품	8708	13/18%	10/15%	2003.1.1	6.0%	6.0%	2008.1.1	20.0%	2012.1.1
굴삭기	8429	3.0%	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오토바이	871120	30.0%	20.0%	2003.1.1	6.0%	6.0%	2003.2.1	0.0%	2000.1.1
자전거	871200	23.0%	20.0%	2000.7.1	6.0%	6.0%	2003.2.1	15.0%	2012.1.1
타이어	4011	23.0%	20.0%	2000.7.1	6.0%	6.0%	2003.2.1	30.0%	2012.1.1 ²⁾
철강	7219	3/13%	0/1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polyethers 등 대부분	3907	13.0%	1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polyacetals	39071000	18.0%	15.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polyethylene terephthalate	39076000	13.0%	1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韓-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여성용의류	6202	35.0%	20.0%	2007.1.1	6.0%	6.0%	2003.2.1	40.0%	2012.1.1 ²⁾
남성용의류	6203	35.0%	20.0%	2007.1.1	6.0%	6.0%	2003.2.1	40.0%	2012.1.1 ²⁾
신발	6403	35.0%	20.0%	2000.7.1	6.0%	6.0%	2003.2.1	30.0%	2010.1.1
스포츠신발	6404	35.0%	20.0%	2003.1.1	6.0%	6.0%	2003.2.1	30.0%	2012.1.1
우산	6601	30.0%	20.0%	2000.7.1	6.0%	6.0%	2003.2.1	30.0%	2012.1.1
시계	9103	30.0%	20.0%	2007.1.1	6.0%	6.0%	2003.2.1	0.0%	2000.1.1
낚시대	950710	25.0%	15.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낚시바늘	950720	25.0%	15.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안전모	650610	18.0%	15.0%	2007.1.1	6.0%	6.0%	2003.2.1	25.0%	2012.1.1
사람인형	95030021	30.0%	2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동물인형	95030041	20.0%	1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비디오게임기	95041000	23.0%	20.0%	2000.7.1	6.0%	6.0%	2003.2.1	0.0%	2000.1.1
볼펜	960810	30.0%	20.0%	2003.1.1	6.0%	6.0%	2003.2.1	15.0%	2012.1.1
연필, 크레용	960910	23.0%	20.0%	2007.1.1	6.0%	6.0%	2003.2.1	20.0%	2012.1.1
화장품	3304	25.0%	15.0%	2007.1.1	6.0%	6.0%	2003.2.1	20.0%	2012.1.1 ²⁾
1) 현재 무관세 조치, 2) list 3, 3) tariff quota 적용, 4) 5%p 관세인하원칙이 2012년까지 적용									

<참고문헌>

- 강하연(2007), 'EU 기체결 FTA의 통신 관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한-EU FTA 통신서비스부문 공청회 자료, 2007.4
- 고종환(2006), '한·EU FTA의 산업별 영향 분석', 한국EU학회, 한국유럽학회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06.8
- 김도훈(2006), '한·EU FTA와 제조업 분야 주요 이슈', 산업연구원, 2006.11
- _____ (2007), '한·EU FTA와 제조업 교역분야 주요 이슈', 산업연구원, 2007.1
- 김세원(2004), 『EU경제학』, 박영사, 서울
- 김홍중 외(200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9
- 김홍중(2005),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2005.1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6),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 분석', 2006.12
- 무역연구소(2005), 'FTA와 관세환급제도', 2005.7.8
- 박순찬(2004), '한-EU FTA 타당성 검토', KIEP 용역보고서
- 서진교(2006), '한·EU FTA와 농업부문 파급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11
- 외교통상부(2007), '2006 외국의 통상환경', 2007.1
- 이종원(2006), 'EU의 FTA정책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2006
- 이종원, 신상협(2006),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EU FTA: Lessons from the Previous Experience', 유럽연구, 제 24호, 2006. 겨울
- 정재화(2006), '한국과 EU의 경제·통상 관계', 한국무역협회, 2006.11
- 주한 EU상공회의소(2006), '2006 무역장벽백서', 2006
- Anne-Celia Disdier et al(2007),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agricultural trade: Evidence from SPS and TBTs agreements', CEPII, 2007.4
- Antoni Estevadeordal, Kati Suominen(2003), 'Rules of Origin in the World Trading System', WTO, 2003.11
- Cliff Stevenson(2005), 'Evaluation of EC Trade Defence Instruments', Mayer, Brown, Rowe & Maw, 2005.12

-
- _____ (2007),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2007', 2007.4
- Copenhagen Economics(2005), Market Opening in Network Industries, 2005.9
- _____ (2007), 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2007.3
- ECDPM(2004), Comparing EU free trade agreements, Inbrief, 2004
- EUCCK(2006),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s 2006, press conferences, 2006
- Eurochambres(2007), 'The role of Customs Representatives in the era of the Modernised Customs Code', Position Paper, 2007.2
-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In Brief ; Comparing EU Free Trade Agreements', 2006.4
- 2006.11
- European Commission(1999),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311/1, 1999.12.4
- _____ (200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157, 2000.6.30
- _____ (2001), Barriers to Trade in Business Services, 2001.1
- _____ (2003), Making globalisation work for everyone: The European Union and world trade
- _____ (2004), Trade Barriers Regulation, 2004
- _____ (2005),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alytical aspects, 2005.1
- _____ (2006),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 _____ (2006),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549, 2006.10.31
- _____ (2006), Global Europe: Europe's trade defence instruments in a changing global econom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2006.12
- _____ (2007), Bilateral Trade Issues: Korea, 2007.3

- Eurostat(2007), Euro-Indicators news release: Provision of deficit and debt data for 2006, 2007.4.23
- Evdokia Moise(2006),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in the area of trade facilitation',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32, 2006.3
- Gerlach, Carina(2006), Does Business Really Run EU Trade Policy? Observations about EU Trade Policy Lobbying,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POLITICS: 2006 VOL 26(3), pp. 176-183
- International Customs Tariffs Bureau(2002), 'International Customs Journal', 'Mexico', No. 27, 17th Edition, 2002.12
- _____ (2005), 'International Customs Journal', 'Republic of Chile', No. 150, 17th Edition, 2005.1
- _____ (2006), 'International Customs Journal', 'South Africa', No.42, 22nd Edition, 2006.12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IIPA)(2007), Annual Special 301 Report, 2007.4
- J. Peter Neary(2004), 'Europe on the Road to Doha: Towards a New Global Trade Round', CESinfo Economic Studies, Vol. 50, 2007.2
- John Dryden(2007), 'Counting the cost: The Economic Impacts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Third Global Congress on Combating Counterfeiting and Piracy, 2007.1
- Leonard, Dick(2005), Guide to the European Union, The Economist.
- McQueen, Matthew(2002), The EU's Free-trade Agreements with Developing Countries: A Case of Wishful Thinking?, The World Economy, Vol. 25, Issue 9, Sept. 2002, pp. 1369-1385.
- Mehmet Ugur(1998), 'Explaining protectionism and liberalization in European Union trade policy: the case of textiles and clothing',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998.12
- Nora Dihel, Blanka Kalinova(2004), Services barriers and their economic impact,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7, 2004.10
- Norbert Wilson(2007), 'Examining the trade effect of certain custom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42, 2007.1

- OECD(2005), Looking beyond tariffs: The role of non-tariff barriers in world trade, OECD Trade Policy Studies, 2005
- _____(2007), OECD codes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and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OECD User's Guide, 2007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Rules of Origin in FTAs; A World Map', 2003.4
- Paul Brenton, Miriam Manchin(2003), 'Making EU Trade Agreements Work: The role of Rules of Origin', Blackwell Publishing Ltd, 2003
- Paul Conway, Giuseppe Nicoletti(2006), 'Product market regulation in the non-manufacturing sectors of OECD countries: Measurement and highlight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530, 2006.12
- Roman Grynberg, Veniana Qalo(2006), 'Labour Standards in US and EU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Journal of World Trade 40(4), 2006
- Samia Costa Tavares(2004), 'Explaining Changes in the EU's Customs Classification: new Products or Political Economy',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2004.3
- Schneider, Andreas(2006), The EU-Mercosur Free Trade Agreement: The Implications for Trade in Agriculture, CEPS Policy Brief No. 107/June 2006.
- Stefano Micossi(2006), 'Fixing the Services Directive', CEPS Policy Brief, 2006.6
- Sven Langedijk, Werner Roeger(2007), Adjustment in EMU: A model-based analysis of country experiences, European Economy, no.274, 2007.3
- UNCTAD(2003), Dispute Settlement: Investor-State,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2003
- _____(2005),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The New Interface ; Chapter V: Rule of Origin: The Emerging Gatekeeper of Global Commerce', 2005
- UNICE, 'UNICE Strategy on an EU Approach to Free Trade

Agreements', 2006.12.7

WTO(1994),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GATS/EL/31, 1994.4

_____(2005), World Trade Report 2005

_____(2007), Trade Policy Review : European Communities, 2007.1